

세법연구 07-11

#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2007. 12

박명호 · 기은선 · 김정아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 현황	11
1. 세무사의 자격요건	11
가. 자격취득요건	11
나. 세무사 시험제도	12
다. 실무교육	14
라. 등록	14
2. 세무사의 업무 범위	15
3.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요건	16
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16
나.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16
4.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의무	17
가. 세무사의 의무	17
나. 세무법인의 의무	18
5. 징계사유	19
가. 세무사의 징계사유	19
나. 세무법인의 징계사유	19
6.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그 위상	20
7. 최근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추이	22
가. 개요	22
나. DD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22
다. FTA 협정에 의한 세무사서비스 시장 개방	24

라.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과 세무사법 개정	25
Ⅲ. 외국의 세무사제도 현황	28
1. 북아메리카지역	28
가. 미국	28
나. 캐나다	33
2. 유럽지역	34
가. 독일	34
나. 영국	40
다. 프랑스	49
라. 오스트리아	51
마. 기타 EU 국가	55
3. 아시아 및 호주지역	69
가. 일본	69
나. 중국	83
다. 홍콩	89
라. 호주	90
Ⅳ. 세무사제도의 국제비교	103
1.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103
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103
나. 세무대리인을 지칭하는 명칭	104
다.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	105
2.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의 범위	106
가. 개요	106
나. 특정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	107
다.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	108
3.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	108
가. 개요	108

나. 시험 응시 자격	110
다. 실무경력 요건	110
라. 시험통과 요건	111
4. 세무사 등록현황	111
가. 각국의 세무사협회	111
나. 등록현황	113
5. 세무사의 업무 범위	113
6.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및 설립요건	115
가. 법적 형태	115
나. 설립요건	115
V.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 표목차

〈표 II-1〉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11
〈표 II-2〉	우리나라 세무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3
〈표 II-3〉	우리나라 세무사시험의 시험면제규정	13
〈표 II-4〉	우리나라의 세무법인 설립요건	16
〈표 II-5〉	우리나라 세무사의 의무	17
〈표 II-6〉	우리나라 세무법인의 의무	18
〈표 II-7〉	우리나라 세무법인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19
〈표 II-8〉	우리나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업무범위	20
〈표 II-9〉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록현황	20
〈표 II-10〉	우리나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일반적인 세무대리 업무 범위	21
〈표 II-11〉	우리나라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매출현황	21
〈표 II-12〉	DD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내용	23
〈표 II-13〉	한·미 FTA와 세무서비스 시장개방 내용	24
〈표 III-1〉	미국 등록대리인 시험과목	29
〈표 III-2〉	미국 등록대리인의 업무 범위	31
〈표 III-3〉	미국의 자격증 인가주체와 업무비교	33
〈표 III-4〉	독일 세무사시험의 시험과목	35
〈표 III-5〉	독일 세무사의 업무 범위	36
〈표 III-6〉	독일의 세무관련 자격증 현황	39
〈표 III-7〉	독일의 연간 세무대리인 자격자(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39
〈표 III-8〉	CIOT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43

〈표 Ⅲ-9〉 CIOT 시험의 시험과목 일부 면제 규정	45
〈표 Ⅲ-10〉 오스트리아의 세무사시험 과목	52
〈표 Ⅲ-11〉 CFE의 회원단체	58
〈표 Ⅲ-12〉 AITI 시험의 시험과목	63
〈표 Ⅲ-13〉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무사제도 비교	69
〈표 Ⅲ-14〉 세리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70
〈표 Ⅲ-15〉 일본의 세리사 시험 응시자격	73
〈표 Ⅲ-16〉 일본의 세리사 시험과목	74
〈표 Ⅲ-17〉 일본의 세리사 시험 일부 면제 규정	75
〈표 Ⅲ-18〉 일본 세리사의 업무 범위	77
〈표 Ⅲ-19〉 일본 세리사의 의무	79
〈표 Ⅲ-20〉 일본 세리사법인의 의무	80
〈표 Ⅲ-21〉 일본 세리사의 징계사유	81
〈표 Ⅲ-22〉 일본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리사의 업무범위	82
〈표 Ⅲ-23〉 일본의 세리사 등록자 및 세리사법인 현황(2007년 10월말 기준)	82
〈표 Ⅲ-24〉 호주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한 학력 및 경력요건	91
〈표 Ⅲ-25〉 세무대리인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호주)	97
〈표 Ⅳ-1〉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비교	103
〈표 Ⅳ-2〉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명칭 비교	104
〈표 Ⅳ-3〉 각국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과 그 유형	105
〈표 Ⅳ-4〉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106
〈표 Ⅳ-5〉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	109
〈표 Ⅳ-6〉 각국의 세무대리인 협회	112
〈표 Ⅳ-7〉 각국의 세무대리인 등록자 수	113
〈표 Ⅳ-8〉 세무사의 업무범위 국제비교	114
〈표 Ⅳ-9〉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115
〈표 Ⅳ-10〉 세무법인의 설립 형태	116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서비스 협상부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3월과 200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WTO에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양허안의 내용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그러나 외국세무사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세무사 또는 외국세무법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DDA 협상 이후에도 칠레, 싱가포르 등 15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문에는 세무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3월 한·미 FTA 협상의 타결과 함께 법률·회계·세무서비스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러한 협상 결과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TA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국세무자문사』<sup>1)</sup> 제도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제도와는 달리 세무사제도의 경우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며,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가 가지는 역할과 위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 및 외국세무자문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의 세무사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제도에 관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등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들의 조세전문가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

1) “II.7.라” 참조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 현황과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추이, 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24개국의 조세전문가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대상 국가들은 현재 FTA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미국과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참고 목적으로 일본, 중국, 홍콩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를 추가했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제Ⅲ장의 내용들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국가별로 비교한 후,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 현황

### 1. 세무사의 자격요건

#### 가. 자격취득요건

##### 1)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 시험 합격자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sup>2)</sup>.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II-1〉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sup>1)</sup>

구 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세무사 명칭 사용
	실무교육	등록요건	
세무사시험 합격자	6개월(또는 1개월)간의 실무교육	있음(세무사등록부)	가능
공인회계사	없음(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있음(세무사대리업무등록부)	불가
변호사	없음(변호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없음	불가

주: 1) 세무사법 제20조, 제20조의 2

##### 2) 세무사의 결격사유

i) 미성년자, ii)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iii)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2) 세무사법 제3조

않은 자, iv)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나. 세무사 시험제도

### 1) 특징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제2차 시험(주관식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당해 연도와 그 다음연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sup>3)</sup>.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절대평가, 과목합격 불인정). 다만, 최종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sup>4)</sup>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sup>5)</sup>.

### 2) 응시자격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sup>6)</sup>. 그러나 학력이나 경력 등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없다.

### 3) 시험과목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4항

4) 세무사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5)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6)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표 II-2〉 우리나라 세무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sup>1)</sup>

구분	과 목	출 제 범 위
1차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	회사편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과목 선택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영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대체
2차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주: 1)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제2항 내지 제4항, 별표 1 내지 3

#### 4) 시험면제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는 세무사로서 필요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표 II-3〉 우리나라 세무사시험의 시험면제규정<sup>1)</sup>

자 격 요 건	면제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li> <li>•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li> <li>•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li> </ul>	제1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li> </ul>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주: 1) 세무사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조의 5

## 다. 실무교육<sup>7)</sup>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6개월의 실무교육이 필요하나, 국세행정 경력을 인정받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으로 대체한다. 6개월의 실무교육 중 2달간은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며, 4달간은 실무지도 세무사에 의한 특별교육으로 실무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현장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 라. 등록

### 1) 등록<sup>8)</sup>

세무사 시험 합격자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나,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이 필요없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경우 동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 2) 등록 거부사유

신청자가 ①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③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규정<sup>9)</su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

7) 세무사법 제12조의 5,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2조

8)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20조의 2

9)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상시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제외). 또한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sup>10)</sup>.

## 2. 세무사의 업무 범위<sup>11)</sup>

세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sup>12)</sup>,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의견진술 대리, 부동산가액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업무
- ②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sup>13)</sup> 업무
-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 대행 업무
-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
- ⑤ ① 내지 ④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조세소송 대리 업무의 경우 변호사의 전문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조세소송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 제외),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제외). 그러나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세무사법 제16조).

10)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의 2 제3항

11) 세무사법 제2조

1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13)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3.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요건

#### 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세무사법이 개정됐다.<sup>14)</sup> 이는 세무사가 회사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세무법인 형태의 선택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세무법인의 설립요건<sup>15)</sup>

세무법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무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표 II-4〉 우리나라의 세무법인 설립요건

구 분	내 용
인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원이 세무사이어야 함</li> <li>• 사원이 3명 이상 되어야 함</li> <li>•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li> <li>• 이사와 직원 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함</li> <li>•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함</li> </ul>
물적 요건	자본금 2억원 이상

14) 세무사법 제16조의 16 제2항

15) 세무사법 제16조의 4 내지 제16조의 6,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

## 4.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의무

### 가. 세무사의 의무

세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4장(세무사의 권리·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우리나라 세무사의 의무

의 무	내 용	근거법령
비밀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li> </ul>	세무사법 제11조
성실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li> </ul>	세무사법 제12조
탈세상담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자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받게 하는 일에 가담·방조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상담하는 행위 금지</li> </ul>	세무사법 제12조의 2
명의 대여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는 행위,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는 행위 금지</li> </ul>	세무사법 제12조의 3
사무직원 감독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함</li> </ul>	세무사법 제12조의 4
사무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의 세무사가 1개의 사무소 설치</li> <li>• 개업·휴업·폐업, 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 시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li> </ul>	세무사법 제13조
장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함</li> </ul>	세무사법 제14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할 수 없음</li> </ul>	세무사법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겸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위촉업무 수행</li> </ul> </li> <li>• 영리업무 종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 제외),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li> </ul> </li> </ul>	세무사법 제16조
손해배상책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li> </ul>	세무사법 제16조의 2

## 나. 세무법인의 의무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무직원 교육, 장부작성 및 계정권리의 양수금지 의무 등은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16)</sup>. 세무법인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6〉 우리나라 세무법인의 의무

의 무	내 용	근거법령
비밀엄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세무사법 제11조
성실의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	세무사법 제12조
탈세상담 등의 금지	납세자가 자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받게 하는 일에 가담·방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상담하는 행위 금지	세무사법 제12조의 2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는 행위,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는 행위 금지	세무사법 제12조의 3
사무직원 감독의 책임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함	세무사법 제12조의 4
장부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함	세무사법 제14조
계정권리의 양수 금지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할 수 없음	세무사법 제15조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세무사법 제16조의 7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일정 금액 이상 다른 법인에게 출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행위 금지	세무사법 제16조의 8
명칭	명칭에 “세무법인”이란 문자를 사용해야 함	세무사법 제16조의 9
사무소 설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 세무사가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음	세무사법 제16조의 10
경업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는 행위 금지</li> <li>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당해 세무법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세무사법 제16조의 12

16) 세무사법 제16조의 16 제1항

## 5. 징계사유

### 가. 세무사의 징계사유<sup>17)</sup>

세무사법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2년 이내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 나. 세무법인의 징계사유<sup>18)</sup>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또는 1년 내의 기간 동안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표 II-7〉 우리나라 세무법인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징계 내용	징계 사유
등록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법인 등록을 한 경우</li> <li>•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법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li> <li>•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수행</li> </ul>
등록 취소 또는 1년 내의 업무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요건 충족을 위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 불이행</li> <li>•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명칭사용, 업무수행 방법, 경업금지, 해산, 정관 변경의 신고,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무직원 교육, 장부작성,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의무 등의 위반</li> </ul>

17) 세무사법 제17조

18) 세무사법 제16조의 15

## 6.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그 위상

우리나라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8〉 우리나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업무범위

구 분	업 무 범 위
변호사 <sup>1)</sup>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
공인회계사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업무</li> <li>• 세무대리</li> <li>• 이에 부대되는 업무</li> </ul>
세무사 <sup>3)</sup>	세무대리

주: 1) 변호사법 제3조  
 2) 공인회계사법 제2조  
 3) 세무사법 제2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세무대리가 고유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은 금지된다. 조세소송 대리 업무의 경우 변호사만 가능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할 수 없다. 2007년 9월말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수를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9〉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록현황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비 고
변호사	8,287	36	준회원 제외
공인회계사	7,419	32	휴업 중인 자 제외
세무사	7,260	32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휴업 중인 자 제외
합계	22,966	100	

자료: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한국세무사회(www.kacpta.or.kr)

위 표를 보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한 자 중 세무사의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무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가늠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간의 업무 분장을 정리하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우리나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일반적인 세무대리 업무 범위

구 분	일반적인 업무 범위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소송대리</li> <li>• 대기업이나 금액이 큰 조세불복 업무</li> <li>• 대기업의 조세자문 업무</li> </ul>
공인회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법인 또는 중소기업 감사반의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감대상 기업의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업무</li> <li>- 중소기업의 조세불복 업무</li> </ul> </li> <li>• 소규모 감사반과 일반 개업 회계사의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가 수행하는 세무대리 업무와 거의 차이 없음.</li> </ul> </li> </ul>
세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세무자문 업무</li> <li>• 기장대리</li> <li>•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업무</li> </ul>

한편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매출액에서 세무서비스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II-11>과 같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조정 업무가 회계법인 등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정도이다. 그러나 조세불복 및 세무자문 수수료를 포함하면 전체 매출에서 세무서비스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1> 우리나라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감사	세무조정	경영자문 등	합계
회계법인	510,391	256,179	476,898	1,243,468
감사반	45,242	94,711	229,100	369,053
합계	555,633	350,890	705,998	1,612,521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7. 최근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추이

### 가. 개요

우리나라에서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은 DDA 서비스 협상에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DDA 서비스 협상에 따라 2005년 6월 14일 세무서비스를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했고, 이 내용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양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개인 자격으로 국내 활동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세무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세무법인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세무사 또는 외국세무법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함께 세무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 나. DD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우리나라가 2005년 6월 14일 WTO에 제출한 제2차 양허안의 내용 중 세무서비스(CPC 863)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경 간의 공급과 해외소비에 있어서는 세무조정서비스와 세무대리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았다. 즉, 외국세무사가 자국 내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무조정서비스 또는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 현지의 외국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서비스 또는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업적인 주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세무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의 설립만을 허용했다. 즉, 외국세무사 또는 외국세무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속세무사가 우리나라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 주재의 경우 수평적인 양허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양허하고 있다. 수평적인 양허에 따르면 한국에 설

립되는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 계열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으로 해당 기업의 서비스, 관리 등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이사·중역·전문가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부문별 양허안에서 외국세무법인의 국내지사 설립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세무사가 자연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표 II-12〉 DD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내용

공급방식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국경간의 공급 <sup>1)</sup> (Cross-border supp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음</li> </ul>	없음
해외소비 <sup>2)</sup> (Consumption abro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음</li> </ul>	없음
상업적인 주재 <sup>3)</sup> (Commercial pres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유한회사 형태)의 설립만을 허용</li> <li>세무조정반과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없음
자연인의 주재 <sup>4)</sup> (Presence of Natural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평적인 양허<sup>5)</sup>에서 기재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음</li> <li>세무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 합격 후 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li> </ul>	없음

주: 1)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자국 내에 위치하며 우편, 전화, e-mail 등의 수단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2) 소비자가 공급자가 위치하는 국가로 이동하여 세무서비스를 공급받는 것

3)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4) 외국세무사 또는 외국세무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세무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5) 양허표상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약속사항

자료: TN/S/O/KOR/Rev.1(MAY 2005) REVISED OFFER ON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다. FTA 협정에 의한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의 지침이 되고 있는 GATS 제5조에 따르면 “이 협정은 회원국이 서비스 무역에 관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협약의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04. 4. 1. 발효), 싱가포르(06. 3. 2. 발효), EFTA(06. 9. 1. 발효), ASEAN(07. 6.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 외에도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sup>19)</sup>.

한·미 FTA 이전에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FTA 협정문에는 세무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FTA와는 달리 한·미 FTA 협정문에는 법률·회계·세무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국회의 비준이 끝나지 않아 비공개 상태이나, 세무서비스 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20)</sup>.

〈표 II-13〉 한·미 FTA와 세무서비스 시장개방 내용

단계	시 기	시장개방 내용
1단계	협정효력발생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세무사 또는 미국 세무법인이 국내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미국조세 또는 국제조세(한국조세 제외)에 관한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li> <li>• 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근무할 수 있음</li> </ul>
2단계	협정효력발생일 후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세무사 또는 미국 세무법인이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음(단,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미국 세무사 1인이 전체 지분의 10% 미만을 보유할 수 있음</li> </ul>

19) www.fta.go.kr

20) 한·미 FTA 정책 대토론회(세무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자료집, 한국세무사회, 2007

## 라.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과 세무사법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국가의 인증을 받은 자여야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법은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세무자문사” 제도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바,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내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세무자문사의 범위<sup>21)</sup>

- 우리나라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조약의 체결상대국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법인으로 한정
  - 여기에서 “조약”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과 각 당사국에서 외국세무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함.

### 2)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요건<sup>22)</sup>

- 체결상대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체결상대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해야 함
- 세무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해야 함
-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어야 함

---

21) 세무사법 제19조의 2

22) 세무사법 제19조의 3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는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되는 세무사법시행령에서 다룰 예정

### 3)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범위<sup>23)</sup>

-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원자격국과 관련 있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업무만을 허용
- 세무조정, 조세불복, 기장대리 업무 등은 허용하지 않음.

### 4)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 재정경제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함.<sup>24)</sup>
- 세무서비스 제공의 책임 문제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0일 이상 체류 요건과 국내사무소 설치(또는 국내사무소에 고용) 요건을 두고 있음.
  - 180일 이상 체류요건: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함<sup>25)</sup>.
  - 국내사무소 설치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개설
    - △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sup>26)</sup>에 고용되어 업무 수행
    -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sup>27)</sup>에 소속되어 업무 수행
    - △ 국내 세무법인에 고용되어 업무 수행

### 5)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세무자문사의 관리·감독·명칭사용

- 원자격국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의무위반,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이면 등록 취소<sup>28)</sup>

---

23) 세무사법 제19조의 7

24) 세무사법 제19조의 5

25) 세무사법 제19조의 11

26)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

27)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 원자격국 명칭을 조합하여 자격을 표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무소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sup>28)</sup>.

6) 우회적인 국내시장 진출 제한 규정<sup>30)</sup>

- 우회적인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국내세무사 고용 금지
  - 국내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공동수입방식이나 그 밖에 어떤 방식이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할 수 없음.

---

28) 세무사법 제19조의 6, 제19조의 10

29) 세무사법 제19조의 11

30) 세무사법 제19조의 11

### Ⅲ. 외국의 세무사제도 현황

#### 1. 북아메리카지역

##### 가. 미국

##### 1) 개요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s) 제도가 있다. 등록대리인이란 미국 재무부 규정(Treasury Department rule)에 의하여 설치된 제도로써 연방조세업무 중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전문가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조세업무 중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대리인,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에는 필요한 문서의 작성과 제출, 국세청과 통신과 대화, 조정협의, 조세소송과 상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2) 등록대리인의 자격요건

등록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등록대리인 시험(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로서 세법과 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에는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등록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국세청의 엄격한 자격 조사를 거쳐 등록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가) 등록대리인 시험을 통한 자격취득

등록대리인 시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특별 등록대리인 시험(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 이하 “SEE”)에 응시하여 모든 부문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함.
- ② 등록서식 <Form 23>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함.
- ③ 변호사, 회계사, 등록대리인의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사유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윤리 조사를 통과해야 함.

특별 등록대리인 시험(SEE)은 국세청의 위임을 받아 “Tomson Prometric”이란 회사가 컴퓨터베이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미국 등록대리인 시험과목

Part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Part 1: 개인소득세
Part 2: 기업소득세(Business)	Part 2: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Part 3: 주식회사, 유증과 양도세, 신탁 등
Part 3: 각종 절차와 대리실무 (Representation, Practice and Procedures)	Part 4: 윤리, 등기절차, 항소절차 등

각 파트는 100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시자는 한 번에 모든 Part를 시험 봐야 한다. 매년 10월에 시험이 치러지며, 전년도의 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1976년의 시험은 1975년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대체로 수험생의 60%가 합격하고 있다.

### 나) 세무경력공무원의 자격취득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재무부 고시 230(Circular 230)에 규정되어 있는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국세청에 5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연방세법 규정 및 이 규정에 있는 소득·재산·증여·근로·소비세와 관련되는 조항의 적용과 해석 업무에 관여하였어야 함.
- ② 등록서식 <Form 23>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함.
- ③ 변호사, 회계사, 등록대리인의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사유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윤리조사를 통과해야 함.

### 3) 자격유지조건

등록대리인이 된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72시간, 1년마다 최소 16시간 이상 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이하 “CPE”)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윤리 과목의 경우 반드시 매년 2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전문교육(CPE)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대리인의 연방세무업무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전문지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며, 여기에는 회계과목이나 세무신고 소프트웨어, 윤리과목 등이 포함된다.

### 4) 징계에 관한 규정

재무부 장관은 일정한 위법 행위를 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에 대하여 적정한 통지 및 청문을 거친 후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 수행 자격을 박탈 또는 유보할 수 있다. 징계 절차는 등록대리인 관리관의 지휘하에서 진행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의 복무규율은 다음과 같다.

- ① 등록대리인 등은 의뢰인이 내국세 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를 신속하게 조언해야 함.
- ② 국세청과 관련되는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시켜서는 안 됨.
- ③ 특정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국세청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는 안 됨.
- ④ 이 외에 정부 공무원의 파트너 및 정무의 전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제약이 있음.
- ⑤ 직·간접적인 광고 등에 의하여 일거리를 찾는 것(solicitation)의 금지

### 5) 등록대리인의 업무범위

#### 가) 개요

미국의 경우 특별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연방조세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practice before the IRS)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대리인,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표 Ⅲ-2〉 미국 등록대리인의 업무 범위

구 분	업 무
세무보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대리
세무계획	세무상 결과를 예측하여 최상의 세무계획을 세우도록 조력
국세청 실무	국세청에서 필요한 서류준비, 제출, 협의, 회의에서 의뢰인 대표 등
경영상담	그 밖의 경영 및 재정 관련 상담

#### 나)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Practice before the IRS)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라 함은 세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기초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책임 등에 관하여 국세청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상호 여러 행위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필수적인 서류의 작성, 제출, 연락 및 협의, 청문, 회의에서

의뢰인을 대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sup>31)</sup> 한편 납세신고서의 작성, 납세자를 위한 증인으로 개인적인 출석, 국세청의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등은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라고 보지 아니한다.<sup>32)</sup>

## 6)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

### 가) 등록대리인의 역사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s)의 연혁은 남북전쟁 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분쟁이 과세권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의회는 이러한 세무분쟁 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재무부와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 등록(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의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에 관해서는 재무부 고시 230(Treasury Circular 230)에서 규정하고 있다.

### 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대리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등록대리인의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며,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와 달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는 주정부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2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자격증이 발급되나, 등록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무경력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31) Circular 230, § 10.2(d)

32) Circular 230, §§ 10.2(a) and 10.7

〈표 Ⅲ-3〉 미국의 자격증 인가주체와 업무비교

구 분	인가주체	주요 업무
등록대리인	재무부	세무
CPA(공인회계사)	각 주의 회계사협회	회계 및 감사
Lawyer(변호사)	각 주의 변호사협회	법률업무

## 나. 캐나다<sup>33)</sup>

### 1) 개요

캐나다에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국가공인자격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세전문가에는 ①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 CA), ② 공인일반회계사(Certified General Accountant: CGA), ③ 공인관리회계사(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CMA), ④ 변호사(Solicitor) 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조세변호사, ⑤ 특별한 자격증 없이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 2) 각 조세전문가의 업무개요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인회계사, 공인일반회계사, 공인관리회계사 등 3가지 종류의 회계사가 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가 당국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면 납세자가 출석하지 않고 회계사가 직접 세무조사관과 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회계사가 조사 장소에 동석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조세소송의

33) 諸外國の税理士制度(1994) pp. 40~43

경우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 이외의 자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공인일반회계사, 공인관리회계사의 경우 재판소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회계서류 작성 등 소송지원 업무만을 할 수 있다.

## 2. 유럽지역

### 가. 독일

#### 1) 세무사의 자격요건

##### 가) 자격취득요건

독일에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나) 세무사 시험제도

##### ① 시험응시자격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정규대학 졸업 후 2년간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 전문대학 졸업 후 3년간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실무와 관련 있는 교육과정 이수
- 국세청의 특정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
-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한 특례규정

##### ② 시험과목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4〉 독일 세무사시험의 시험과목

구 분	과 목
1차 시험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과목의 필기시험(주관식, 논술식)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8개 분야에서 문제 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절차법</li> <li>- 직접세 분야</li> <li>- 재산세 분야</li> <li>- 소비세 및 유통세 분야</li> <li>- 민법 및 경제법 분야</li> <li>- 경영학 및 회계학</li> <li>- 경제학</li> <li>- 세무사법</li> </ul> </li> </ul>
2차 시험 (구두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시험과 동일한 범위에서 문제 출제</li> <li>• 하나의 약술보고와 6개 단위의 구두시험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술보고의 경우 3개의 주제 중 택일 가능</li> </ul> </li> </ul>

주: 실제 필기시험에는 조세 분야에 대한 문제만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바, 전체 문제 중 법인세와 회계학이 약 1/3, 부가가치세와 조세절차법이 약 1/3, 그리고 나머지 세법 분야에서 약 1/3이 출제되고 있음.

#### 다) 등록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협회에 세무사 면허 신청을 하고, 면허를 받게 된다. 면허의 수여는 직업증표 교부를 통해 이뤄지며, 교부 전에 세무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면허 발급을 위한 인적요건 심사가 이뤄지는 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된다.

#### 2) 세무사의 업무범위

독일 세무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독일 세무사의 업무 범위

구 분	업 무
장부기장 의무이행 시 조력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부기장 및 결산 업무에 대한 조력행위</li> <li>장부기입 대차대조표 및 손익 산정에 관한 감사</li> </ul>
세무형사사건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행정청의 조세형사소송절차 및 과태료절차 수행 시 변호인으로 서 업무수행</li> </ul>
경영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설립, 법형식의 선택, 위치선정, 합병, 기업분할 및 경영과 제, 조직상담, 전산상담, 보조금에 대한 상담, 특허상담 등</li> </ul>
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사의 업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담 허용</li> </ul>
조세소송 등의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행정절차 대리: 조세확정절차, 조세집행절차를 포함한 조세징 수절차, 외부조사, 법원 이외에서 법률구조절차 등</li> <li>조세소송절차에서 대리</li> </ul>

### 3)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요건

#### 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세무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합명회사가 가능하다.

#### 나)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 ① 세무법인의 형태

세무법인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중 어느 하나여야 한다.

##### ② 세무사의 책임 운영

무한책임사원과 임원경영자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법인의 소재지에 그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세무사의 업무영역 부합

세무법인의 정관상 목적이 세무사의 업무 영역과 부합해야 한다. 세무법인의 정관, 내규, 상업등기부상 목적 사업이 세무사의 업무과제임을 등기해야 한다.

④ 상호

“세무법인”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정관, 상업등기부, 모든 업무용 서류에서 “세무법인”이란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자본요건

세무법인은 다음의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주주, 유한회사,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은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된 자연인 등으로 한정된다. 둘째, 세무법인에 참여하는 자는 제3자를 위한 지분의 신탁적인 유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셋째,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주주,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의결권의 다수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장부검사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속하여야 한다. 넷째, 법인의 정관에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장부검사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해당하는 사원만이 법인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⑥ 직업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직업배상보험의 체결, 신청에 관한 잠정적인 보증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

다) 세무법인의 설립절차

법인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정보이나 공증증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주(州) 최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책임을 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된 사무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 최고 관청

이 세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며, 세무사협회에 인가 사실을 통지한다.

#### 4)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

##### 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 관계

###### ① 변호사

세무 상담은 세무에 관한 법률 상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사 등 다른 직업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 ②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경영상담 특히, 영리기업의 연차 결산서류를 대상으로 경영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경영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항에 관한 상담과 대리업무 역시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세무사 등 다른 직업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독일의 공인회계사는 대부분 세무사 면허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고객들이 세무사자격증을 겸한 회계사들에게 더 높은 신뢰를 갖고 있고, 두 자격증 간에 상호 시험과목 면제 규정이 적용되며, 시험과목들도 평소의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보니 쉽게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나)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현황

독일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 독일의 세무관련 자격증 현황

(단위: 명)

구분	1994. 1. 1현재	1997. 1. 1현재	2000. 1. 1현재	2003. 1. 1현재	2006. 1. 1현재
세무사 (steuerberater)	45,540	51,217	57,806	63,733	68,781
세무대리사 (steuerbevoll machtigter) <sup>1)</sup>	5,792	4,677	3,626	3,185	2,775
세무법인 (steuerberatun gsgesellschaft)	4,673	5,206	6,056	6,607	7,129
변호사 (Rechtsan walte)	70,438	85,105	104,067	121,420	138,104
공인회계사 (vereidigte buchpruter)	7,617	8,707	9,984	11,355	12,578
공인장부검사사 (vereidigte buchpruter)	4,225	4,217	4,094	4,035	4,091
공인회계사법인 (wirtschaft sprufungsges ellschaften)	1,471	1,783	1,879	2,127	2,318
합계	139,756	160,812	187,512	212,462	235,776

주: 1) 1972년 이전에는 세무사제도와 세무대리사제도가 양존하였으나, 1972년 8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사제도가 폐지됐음. 그러나 그 이전에 세무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경과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 세무사와 세무대리사 양자 사이에는 단지 시험응시조건 중 교육 요건과 시험의 난이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에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

2002년 기준으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연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Ⅲ-7〉 독일의 연간 세무대리인 자격자(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단위: 명)

구분	인원(2002년 10월 기준)
세무사	2,500
변호사	6,500
공인회계사	500

## 5) 독일의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sup>34)</sup>

### 가) 외국의 세무전문가의 업무허용 범위

독일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한 나라에서 거주국의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독일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세무사의 경우 유럽공동체 조약 제50조에 따른 업무만이 허용되는바, 국경을 넘는 세무서비스의 경우 임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외국 세무사의 경우 독일의 직업명칭 즉, “세무사(Steuerberater)”, “세무대리인(Steuerbevollmaechtiger)”, “세무상담법인(Steuerberatungsgesellschaft)”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자국의 공식언어로 된 직업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나) 외국인 세무사의 활동 현황

외국인 세무사의 활동 범위에 관한 2002년 5월 10일자 독일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독일 내에서 외국인이 조세 상담을 한 경우는 398건이며, 주된 활동 영역은 국경과 근접한 연방주로 분석되고 있다.

## 나. 영국

### 1) 개요

영국의 경우 누구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에는 공인회계사, 사무변호사, 조세검사관 퇴직자 등이 있다. 누구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업무 감독이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민간 협회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주요 단체로는 조세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Taxation Technicians: 이하 “ATT”)와 공인조세협

34) 계간 『세무사』, 「독일연방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 2006년 겨울호

회(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이하 “CIOT”)가 있다. 특히 CIOT의 경우 영국을 대표하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EU 각국의 조세 관련 대표기관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유럽세무연합(Confederation Fiscale Europeenne: 이하 “CFE”)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단체의 설립 연혁을 살펴보면 1930년에 CIOT가 설립됐고, 1989년에 CIOT의 지원하에 ATT가 설립됐다. CIOT 또는 ATT에서 발급하는 세무자격증을 가진 자는 영국에서 조세전문가로서 그 지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영국의 대부분의 세무전문가가 이러한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세무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협회에 등록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sup>35)</sup>.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의 세무전문가 역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직 지위와 영국 조세경력 등에 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공인조세자문가(Chartered Tax Adviser: 이하 “CTA”) 또는 조세전문가(Tax Technician)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파트너십 형태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4,000명 이상의 조세전문가가 CIOT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약 3,300명의 연구생이 시험 응시를 위해 CIOT에 등록되어 있다<sup>36)</sup>. ATT에는 9,000명이 넘는 회원과 연구생이 등록되어 있다.

35) 諸外國の税理士制度(1994)

36) <http://www.tax.org.uk/showarticle.pl?id=3173;n=10100>

## 2)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 가) 공인조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 ① 세무사 자격증의 종류<sup>37)</sup>

CIOT가 부여하는 자격증에는 특별회원(fellow)과 준회원(associate), 두 가지가 있다. 특별회원의 경우 CTA(fellow) 또는 FTII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준회원의 경우 CTA 또는 ATII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CIOT가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3년 이상 전문가 경력이 필요하다. 특별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세무 경력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논문이나 일련의 연구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 이 외에도 국제조세 업무 종사자에게 시험을 거쳐 자격증(diploma)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시험제도<sup>38)</sup>

##### □ 특징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6개월 전에 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생 등록 신청서’와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8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전에는 한 번에 4과목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였지만, 이러한 시험제도에 관해 비관이 거세짐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부분합격제도(credit retention system)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험방법이 존재한다.

- 방법 A: 4과목 각각에서 합격점을 얻는 방법. Paper I의 경우 55%, Paper II, III, IV의 경우 50% 이상 점수를 얻어야만 합격 가능
- 방법 B: 4과목 통산하여 210점 이상을 얻되, Paper I의 경우 55%, Paper II, III, IV의 경우 45% 이상 점수를 얻어야만 함

37) <http://www.tax.org.uk/showarticle.pl?id=3173;n=10100>

38) How to become a Chartered Tax Adviser 2007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처음 시험을 볼 때에는 4과목의 시험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방법 A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다.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후 2년 동안 재응시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4과목의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 CTA 시험에 최종 합격한다.

□ 응시자격

일반적인 경우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상급 조세감사관이 되기 위한 FT2 또는 CPT 시험 합격자, CIO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내 및 EU 소재 단체 회원들은 학력이나 경력 요건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 Ⅲ-8〉 CIOT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머스 대학에서 회계 및 조세 전공으로 BA, 기업소득법(Business and Revenue Law) 전공으로 LLB, 조세법 전공으로 LLB, 국가수입법(Revenue Law) 전공으로 LLB, 조세 전공으로 MA 학위를 받은 자</li> <li>• 런던 대학에서 조세 전공으로 LLM 학위를 받은 자</li> </ul>		
경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간접세 분야에서 근무하고 CIOT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li> <li>• 사용자와 실무수습 계약(training contract)을 체결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CIOT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ul>		
다른 자격증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글랜드 · 웨일즈 · 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공인회계사</li> <li>• 영국 또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li> <li>• 세무국(Inland Revenue)에서 실시하는 FT2 또는 CPT 시험 합격자</li> <li>• 국세청(HR Revenue &amp; Customs)에서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법률 및 technical training 시험 합격자</li> <li>• 고급 국제조세 자격증(Advanced Diploma in International Taxation) 소유자</li> </ul>		
CIO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내단체 회원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T 시험 합격자</li> <li>• 공인관리회계사협회</li> <li>• 기업재무담당자협회</li> <li>• 간접세협회</li> </ul>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회계사협회</li> <li>• 공인비서및관리자협회</li> <li>• 공인공공재무회계협회</li> <li>• 아일랜드조세협회</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T 시험 합격자</li> <li>• 공인관리회계사협회</li> <li>• 기업재무담당자협회</li> <li>• 간접세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회계사협회</li> <li>• 공인비서및관리자협회</li> <li>• 공인공공재무회계협회</li> <li>• 아일랜드조세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T 시험 합격자</li> <li>• 공인관리회계사협회</li> <li>• 기업재무담당자협회</li> <li>• 간접세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회계사협회</li> <li>• 공인비서및관리자협회</li> <li>• 공인공공재무회계협회</li> <li>• 아일랜드조세협회</li> </ul>		
CIO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EU 단체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유럽경제자유구역 또는 스위스의 단체 중 위원회가 CIOT와 유사한 단체라고 인정하는 단체의 자격증 소유자</li> </ul>		

## □ 시험과목

CTA 시험에는 Paper I, II, III, IV 네 과목이 있다.

- Paper I (조세일반: General Taxation)의 경우 세목별로 광범위한 세법 지식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소득세(Personal Tax), 사업소득세(Business Tax), 자본이득세 및 신탁(Capital Taxes and Trusts), 부가가치세(VAT), 기타 간접세 (Other Indirect Taxes)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각 과목이 6점짜리 20개의 필수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답식 형태이다.
- Paper II (선택 시험: Option Paper)의 경우 전문적인 세무분야에서 응시자가 가진 지식의 깊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지식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산형과 서술형 또는 두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실무(General Practice), 개인·신탁·유산 과세(Taxation of Individuals, Trusts and Estates), 기업(Companies), 간접세(Indirect Taxation) 등 4가지 대체적인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10, 15, 20 점까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100점이며,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 Paper III (조세의 상호작용: Interaction of Taxes)의 경우 실무에서 정보를 선별하고 핵심적인 문제와 부수적인 문제를 판별하는 능력, 청중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능력, 여러 가지 조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답이 가능한 문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일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서술형 위주의 시험이다. 일반 실무, 개인·신탁·유산 과세, 대기업, 간접세 분야의 2문제 등 모두 5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 Part IV (전문직업인의 책임과 윤리, 법률: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Ethics and Law)의 경우 Part A (전문직업인의 책임과 윤리)와 Part B (법률)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A의 경우 10, 15, 20점짜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50 점이다. Part A 시험에는 전문직업인 규정과 실무 지침(Professional Rules and Practice Guidelines), 조세전문가 윤리(Professional Conduct in Relation to Taxation), 돈세탁방지법 2002, 돈세탁방지규정 2003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된다. Part B의 경우 10, 15점짜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50점이다. Part B

시험에는 “조세전문가를 위한 필수 법률(Essential Law for the Tax Adviser)” 제4판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출제된다.

□ 시험면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한 과목 이상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표 Ⅲ-9〉 CIOT 시험의 시험과목 일부 면제 규정

자 격 요 건	면제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 상급 조세검사관이 되기 위한 세무국의 FT2 또는 CPT 시험 통과자</li> <li>• 간접세협회 회원으로 간접세협회가 실시하는 시험 통과자</li> <li>•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법률 및 technical training 시험 통과자</li> <li>• 고급 국제조세 자격증 소유자</li> </ul>	Paper 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공인회계사협회 최종 시험 통과자</li> </ul>	Paper Ⅰ

③ 회원가입<sup>39)</sup>

시험합격 후 협회 회원으로 승인되면 CTA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직 전 3년 이상 전문직 경력을 쌓았다면 회원 가입이 승인된다. 본머스 대학에서 앞에서 설명한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3년 중 1년의 경력이 인정된다. 시험결과 발표 또는 경력 요건의 충족시점으로부터 18개월 내에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명의 보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들이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다.
- 지원자가 회원으로 적합한 자이므로 추천한다.

2명의 보증인은 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고, CIOT의 특별회원이나 준회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CIOT가 정한 협회의 회원에 해당해야 한다.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

39) “How to become a Chartered Tax Adviser” 2007 pp. 21~22

되는바, 자신의 전문가 신분(professional standing)과 직전 3년간의 영국 조세 경력에 관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영국 조세에 관해 3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경력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공업무(public practice)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영국에서 전문적인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의 파트너, 이러한 회사 또는 개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 자
- 정부 또는 시의 관청, 은행 또는 영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상업적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

나) 조세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Taxation Technicians: 이하 “ATT”)<sup>40)</sup>

### ① 세무사 자격증의 종류

ATT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조세전문가(Taxation Technician)”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험제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연구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 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영어 및 수학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연구생 등록을 위해서는 1명의 보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술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지원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하다.
- 지원자가 회원으로 적합한 자이므로 추천한다.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ATT 또는 CIOT의 회원,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회원, 국

---

40) “ATT student prospectus and detailed syllabus,” 2007

세청의 고위관리, 신탁 및 유산 실무자 협회의 회원, 지원자의 현재 또는 직전 직장 상사, 지원자가 다닌 중·고등학교의 장(21세 이하 지원자의 경우에만)에 해당해야 한다.

7개의 분야별로 시험이 시행되며, 시험에 합격하면 분야별로 독자적인 능력인증서(Certificates of Competency)를 수여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개인 신고서 작성 업무에만 종사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과세 시험 하나에만 응시하여 개인과세 분야의 능력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가 있다.

- 소득세(Personal Taxation)
- 법인세 및 회계원리(Business Taxation & Accounting Principles)
- 세무행정 및 윤리(Practice Administration & Ethics)
- 법인세: 고급기술(Business Taxation: High Skills)
- 상속세, 신탁 및 유산(IHT, Trusts & Estates)
- 부가가치세(VAT)
- 법인의 신고·납부(Business Compliance)

관련 법령 및 회계 문제들은 각 시험에서 다루지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득점해야 한다. 일단 인증서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유효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동안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4개의 유효한 능력인증서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소득세」, 「법인세 및 회계원리」, 「세무행정 및 윤리」 분야의 능력인증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③ 회원가입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i) 4과목(필수 3과목 포함)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ii) 영국 조세에 관해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iii) 회원이 되기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영국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가 지위와 영국 조세 경력에 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업무범위

협회 회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란 것은 없다. 다만, 협회 회원이 되면 일정한 경우에 사무변호사<sup>41)</sup>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법정변호사<sup>42)</sup>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sup>43)</sup>

### 4) 세무법인의 설립요건<sup>44)</sup>

CIOT 회원 규정(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s Membership Regulations)에 따르면 개인사무소(sole practitioner)와 파트너십(partnership), 회사(corporate) 모두 CTA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는 회원이 자신이 속한 파트너십이나 회사를 CTA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파트너십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회사의 파트너로서 개업중인 회원이 자신이 속한 파트너십을 CTA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각 파트너가 CTA여야 한다. 또는
- ② 파트너 중 75% 이상이 CTA 또는 공인 자격증(Recognized Status)<sup>45)</sup> 보유자여야 한다. 그리고 CTA 자격증을 가진 파트너의 숫자가 최소인원<sup>46)</sup> 이상이면 CTA 또

41) 소송준비 작업을 하고, 의뢰인의 사건 설명을 법정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

42)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사

43) Professional Rules and Practice Guidelines 7.3.6.

44) CIOT 협회규정

45) 아일랜드조세협회, ATT,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공인회계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공인관리회계사협회, 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의 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 공인비서 및 관리자협회, 위원회가 CIOT와 유사한 단체라고 인정하는 EU 단체

46) 파트너의 숫자가 1~11명이면 최소 1명, 12~20명이면 최소 2명, 21~31명이면 최소 3명,

는 공인 자격증 보유자가 가진 의결권이 75% 이상 되어야 한다.

- ③ 협회 사무국장에게 당해 회사와 각 파트너가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협회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회사

기업체의 이사로서 개업중인 회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를 CTA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각 이사가 CTA여야 한다. 또는
- ② 이사 중 75% 이상이 CTA 또는 공인 자격증 보유자여야 한다. 만약 CTA 자격증을 가진 이사의 숫자가 최소인원 이상이면 CTA 또는 공인 자격증 보유자가 이사회, 위원회 등에서 가진 의결권이 75% 이상 되어야 한다.
- ③ 협회 사무국장에게 당해 회사와 각 이사가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협회 윤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프랑스<sup>47)</sup>

##### 1) 개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국가공인자격증제도가 없다. 대신 변호사(Avocat), 공인회계사(Expert Comptable), 회계감사인(Commissaire Comptes), 공증인(Notaire) 등이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회계지식에 정통한 회계사가 기장대리 업무와 간단한 세금신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소송 지원이나 소송대리 업무 등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

32~44명이면 최소 4명, 그 이상이면 최소 5명의 파트너가 CTA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47) 諸外國の税理士制度(1994) pp. 198~221

## 2) 각 조세전문가의 업무개요

### 가) 변호사

변호사는 종래의 법률고문 업무와 순수 법률 활동을 모두 수행한다. 따라서 세무신고에서부터 소송에 이르는 모든 세무 업무가 가능하다.

- ① 재판 외의 법률 조언, 상담, (구)법률고문이 수행하던 계약서 작성, 회사 정관의 초안 작성, 법적 교섭 등: 이러한 업무들은 공인회계사, 보험회사, 은행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독점성이 없다.
- ② 소송지원 및 대리 업무 등: 변호사의 독점 업무이다.

### 나)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 업무에는 기장대리, 재무관리, 회계자문 및 감사업무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 내부 감사를 위해 후술하는 “회계감사인” 제도를 두고 있는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인으로 등록하고 기업내부 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경리와 감사 업무가 가능하며,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경리에서 파생되는 일상의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 또한 경리 또는 감사 업무 등에 의해 고객이 된 자에 한해서만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공인회계사가 법정에서 납세자를 위해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를 비롯하여 법률과 관련 있는 일련의 활동들은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률 고문)와 공인회계사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 다) 공증인

공증인의 경우 재산의 이전·양도와 관련 있는 세목과 관련하여 조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증여·상속과 관련 있는 서류들은 공증인이 사전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세무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이 세

금을 계산한다. 부동산 등록세를 계산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 역시 공증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필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업무 등은 하지 않는다.

#### 라)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의 법정 감사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감사로서 종사한다. 프랑스에는 감사직이 없고 이사가 업무 감사를 함께 한다. 회계감사인의 90% 이상이 공인회계사이다.

### 라. 오스트리아

#### 1) 세무사의 자격요건

##### 가) 자격취득요건

오스트리아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가 요하는 교육과 실습을 받고, 전문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나) 세무사 시험제도

###### ① 응시자격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에 합치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문직업에 합치하는 교육이란 전문직업에 합치하는 대학과정(오스트리아의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법학 또는 국가학을 전공한 경우)이나 전문직업에 합치하는 단과대학과정 또는 대학과정법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특성을 가진 전문직업에 합치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음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오스트리아의 경제수탁사무실에서 직업 연수자 또는 영리조합과 경제조합의 회계감사단체에서 회계감사연수자로 활동해야

한다. 독립기장사의 자유업을 최소한 12년 동안 주된 직업으로 하는 경우(여기에서 최소 6년간은 회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야 한다)에는 학력 요건과 관계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 ② 시험과목

세무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 □ 필기시험

두 개의 사례형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시험마다 6시간의 답안 작성 시간이 주어진다.

〈표 III-10〉 오스트리아의 세무사시험 과목

구분	과 목
필기시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결산서의 작성</li> <li>- 상법과 조세법에 관한 평가</li> <li>- 조세법상 과세소득의 파악과 이익의 산정</li> <li>- 납세신고서의 작성</li> <li>- 판매세, 거래세 및 기타 공과금</li> </ul> </li> </ul>
필기시험 2	회계제도론, 회계처리론, 경영학에 관한 문제

### □ 구술시험

구술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문제가 출제된다.

- 직업법, 경제수탁사의 품성 및 위험관리
- 조세절차법을 포함한 조세기본법
- 회계학
- 경영학
- 법학

### ③ 시험면제

세무사 시험응시자가 재무행정청의 고등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첫 번째 사례형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서 조세절차법을 포함하는 조세기본분야에 대한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다) 실무교육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일정한 직업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직업연수자는 연수 또는 연구를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세무사로서 독립적인 업무 행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 세무사의 업무범위

오스트리아 세무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세법과 회계보고 분야의 상담과 보조
- ② 상업장부의 연말결산과 대차대조표에 관한 상담
- ③ 연방세, 주세, 지방세의 조세절차, 조세형사절차 및 보조금 사무와 관련하여 재무 행정관청, 기타 지역법인 및 독립행정위원회에서 대리업무
- ④ 감사업무
- ⑤ 장부정리와 대차대조표, 조세법의 분야와 전문가의 판단을 위한 회계보고와 경영학의 인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서 발부
- ⑥ 독립기장사의 업무
- ⑦ 회계상담
- ⑧ 사회보험 분담금 관련 상담
- ⑨ 기업개선자문 등
- ⑩ 업무에 부수하는 법적 상담
- ⑪ 기부금 관련 상담

- ⑫ 노동시장서비스 관련 상담
- ⑬ 재산관리업무 등
- ⑭ 노동기술 문제에 대한 상담

### 3)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및 설립요건

#### 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는 개인사무소, 공동사무소 및 법인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개인사무소 형태로서 이는 세무사가 단독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이다. 공동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의 한 형태인데 대외적으로는 공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일종의 내부적 조합에 해당한다. 법인 형태로는 자본회사와 인적회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바, 허용되는 회사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영리회사법에 의한 개방적 영리회사
- ② 영리회사법에 의한 합자영리회사
- ③ 유한회사법에 의한 유한회사
- ④ 주식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 나)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

##### ① 설립요건

경제수탁회사의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회사형태여야 함.
- 서면에 의하여 회사설립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와 주소
- 제68조의 사원 또는 주주
- 제69조의 감사회
- 제11조의 재산피해-주된 의무보험 체결

- 인적회사의 경우 경제수탁사가 자본과 투표권의 분배에 있어 다수를 차지해야 함.
- 자본회사의 경우 경제수탁사가 기본 자본금 또는 설립금과 투표권의 분배에 있어 다수를 차지해야 함.

## ② 인가절차

세무법인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서류와 함께 경제수탁협회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가가 거부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경제수탁협회가 설립을 인가하며 증명서를 교부하고, 인가를 받은 회사는 직무상 경제수탁회사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마. 기타 EU 국가(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 1) 유럽세무연합(Confederation Fiscale Europeenne)

유럽연합의 형성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각국에서 경제 등의 통합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조세전문가제도 역시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바, 이러한 통합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유럽 각국의 조세전문가 단체가 모여 만든 유럽세무연합(Confederation Fiscale Europeenne: 이하 “CFE”)이다.

CFE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9년에 처음 설립됐고,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5개 국가의 조세전문가 단체가 창립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 CFE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20개의 정식 회원국이 있고,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가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그리스는 조세전문

가 단체가 없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2년 회원으로 가입했다.

CFE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조세전문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각국의 제도 안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전문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조세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행동기준 등에 관한 공통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 제59조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어떤 국민이든 국가와 민족을 불문하고 EU 내의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각국 국민에게 개업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에서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sup>48)</sup>. 그러나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개업의 권리, 이 두 가지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조세전문가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9월 13일 회의에서 CFE의 모든 회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무직업 기준이 채택됐다. 이 기준에는 조세전문가의 자격요건, 행동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에 있어서 표준적인 조세전문가상을 확립하고, 자격의 통일화를 지향하며, 향후 지침이 되어야 할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2) CFE에서 정한 조세전문가의 자격취득요건

CFE 지침(CFE guideline)에는 조세전문가의 자격취득요건과 행동 기준,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CFE의 지침이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나 조세전문가 규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에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sup>49)</sup>. CFE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전문가의 자격취득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로마조약 제52조~제58조

49)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560](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560)

- ① 유럽세무연합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적합한 이론 훈련을 이수해야 함.
  - 조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함.
  - 국가, 국가에서 승인받은 교육시설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함. 이 시험에는 이론적인 세법지식과 실무적인 세법지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② 회원가입을 위한 시험들은 국내법에 기초해야 하며, 되도록 아래와 같은 과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 세법(특히 소득, 재산, 부가가치와 관련 있는 세법)
  - 기업경제학
  - 회계원리
  - 기업법
  - 세무행정(과세관청 및 조세법정에 대한 출두 포함)
  - 전문직업인의 책임과 윤리
  
- ③ 전문직업인에게 적용되는 행동기준과 윤리를 준수하겠다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에 서명해야 회원 가입이 승인된다.

### 3) 세무서비스의 범위<sup>50)</sup>

CFE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서비스의 범위에는 세무신고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제출, 세무전략(tax planning)에 관한 조언 및 의견 제공, 과세당국 및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하고 변호하는 업무, 기타 세무 자문업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 별로 더 좁게 또는 더 넓게 세무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

50)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ethics of tax advisers in Europe “Preamble”

## 4) CFE의 회원단체

## 가) CFE의 회원단체

CFE 회원단체들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1〉 CFE의 회원단체

국 가	단 체
오스트리아	• Kammer der Wirtschaftstreuhänder
벨기에	• Institut des Experts-Comptables et des Conseils Fiscaux
체코공화국	• Komora Daňových Poradců ČR
덴마크	• Foreningen af Skatteradgivere i Danmark
핀란드	• Suomen verokonsultit SVK ry
프랑스	• Institut des Avocats Conseils Fiscaux • Union Professionnelle des Sociétés d'Avocats
독일	• Bundessteuerberaterkammer • Bundesverband der Steuerberater e.V. • Deutscher Steuerberaterverband e.V.
아일랜드	• The Irish Taxation Institute
이탈리아	• Associazione Nazionale Tributaristi Italiani
라트비아	• Latvijas Nodokļu Konsultantu Asociācija
룩셈부르크	• Ordre des Experts-Comptables
몰타	• Malta Institute of Taxation
폴란드	• Krajowa Izba Doradców Podatkowych
포르투갈	• Associação Portuguesa de Consultores Fiscais
슬로바키아공화국	• Slovenská komora danových poradcov
슬로베니아	• Drustvo Davenih Svetovalcev Slovenije
스페인	• Asociación Española de Asesores Fiscales • Registro de Economistas de Asesores Fiscales
스위스	• Treuhand-Kammer Schweizerische Kammer der Wirtschaftsprüfer, Steuerexperten und Treuhandexperten
네덜란드	• De Nederlandse Federatie van Belastingadviseurs • De Nederlandse Orde van Belastingadviseurs
영국	•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 Tax Faculty/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 Wales

주: 정식 회원이 아니라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핀란드의 Suomen Veroasiantuntijatry 제외

나) 회원단체 개요

CFE 회원단체 중 앞에서 살펴보았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4개국과 자료의 한계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한 룩셈부르크와 폴란드 2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국가의 CFE 회원단체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벨기에: Institut des Experts-Comptables et des Conseils Fiscaux(Institute of Accountants and Tax Tips)<sup>51)</sup>

□ 회계사 및 세무사의 법적 지위<sup>52)</sup>

1985년 2월 21일 “기업 보고서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회계사가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1999년 4월 22일에는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고, 이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가 세무사까지 확대되었다.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회계사, 세무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바<sup>53)</sup>,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가 교육기관 및 전문가 집단이다.

□ 회원가입 요건<sup>54)</sup>

회계 또는 세무자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3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벨기에 사람 또는 벨기에 설립 법인
- 세법이나 상법 등의 위반으로 3개월 이상 금고형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함.
- 면책되지 않는 파산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 시민권 및 정치권을 박탈당한 자가 아니어야 함.
- 대학 졸업자, 국왕으로부터 대학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위 소유자 또는 국왕이 정한 자격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51)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13>

52) <http://www.iec-iab.be/fra/beroep.aspx>

53) 1999년 4월 22일 법률의 제16조 내지 제18조

54) [http://www.iec-iab.be/fra/beroep\\_toegang.aspx](http://www.iec-iab.be/fra/beroep_toegang.aspx)

-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3년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친 자
- 실무수습 후 제2차 시험을 합격한 자
- 외부 회원의 경우 상사재판소에서 선서를 한 자

□ 회원의 의무

1999년 4월 22일 법률에 따르면 정직, 성실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무부의 권리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조세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② 체코공화국: Komora Daňových Poradců ČR(The Chamber of tax advisers of the Czech Republic)<sup>55)</sup>

□ 협회의 연혁

1992년 12월 1일 설립되었으며,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협회의 사명

세무전문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세무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며,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낮은 징계가 경고이고 가장 높은 징계가 회원 제명이다.

□ 회원가입 요건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바,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sup>56)</sup>.

55)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65>

56) <http://www.kdpcr.cz/default.asp?nDepartmentID=90&nLanguageID=2>

③ 덴마크: Foreningen af Skatteradgivere i Danmark<sup>57)</sup>

회원가입 자격

세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 州 공인회계사(state authorised public accountant), 변호사 등에게 협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협회의 사명

EU의 세법 조화 작업 등에 있어 덴마크 조세전문가의 국제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분야의 전문 정보를 전달하며, 알기 쉬운 세법 제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핀란드: Suomen verokonsultit SVK ry<sup>58)</sup>

협회의 연혁

1995년 2월 14일 설립되었으며, 민간 협회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핀란드 감사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회원가입 요건

핀란드에는 조세전문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조세전문가를 위한 공식적인 시험이나 학력요건 또한 없다. 따라서 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핀란드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충분한 이론 교육을 받았으며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자면 회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의 사명

국내 세법의 제정을 지원하고, 핀란드의 조세전문가들이 국내조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근의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57)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63>

58)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2](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2)

### ⑤ 아일랜드: The Irish Taxation Institute(이하 "ITI")<sup>59)</sup>

#### □ 협회의 연혁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무 컨설턴트, 회계사,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기타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생을 포함하여 6,095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바, 회원의 종류에는 준회원(associate), 정회원(fellow), 전문가회원(technician member), 통상회원(ordinary member)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 □ 회원가입 요건

준회원(associate)이 되기 위해서는 3부분으로 이루어진 AITI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준회원이 되면 AITI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회원(fellow)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준회원으로 있으면서 협회 또는 아일랜드 세무분야에서 공헌을 남겼거나 세법 또는 실무 분야의 논문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 해에 20명 이상의 정회원을 선출할 수 없고, 정회원이 되면 FITI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회원(technician member)이 되기 위해서는 ITI의 조세전문가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전문가회원이 되면 TMITI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회원이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원 자격을 얻은 자들로서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명칭은 없다.

AITI 또는 TMITI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생 등록 후 일정 기간(AITI의 경우 3년, TMITI의 경우 1년) 동안 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연구생 등록을 위해서는 영어, 수학 등을 포함하는 입학시험(leaving certificate)에 통과해야 하며, 일정한 학위, 전문가 자격증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 재량으로 입학시험이 면제된다. AITI의 경우 전반적인 조세 분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지나, TMITI 경우 신고(compliance)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AITI 시험의 경우 보통 3년에 걸쳐 치러지며,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59)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72>  
<http://www.taxireland.ie/documents/AITISStudentHandbook.pdf>

〈표 Ⅲ-12〉 AITI 시험의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part 1	시험 1	소득세 및 법인세 원칙
	시험 2	개인을 위한 자본이득세
	시험 3	세무실무자를 위한 회계
	시험 4	세무실무자를 위한 법률
Part 2	시험 1	소득세 실무 1
	시험 2	법인세 실무 2
	시험 3	간접세 실무 1
	시험 4	자본취득세
Part 3	시험 1	소득세 실무 2
	시험 2	법인세 실무 2
	시험 3	간접세 실무 2
	시험 4	세무행정 및 윤리

FITI 시험의 경우 소득세 및 원천징수 신고, 개인을 위한 자본이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조세전문가를 위한 회계, 조세전문가를 위한 법률 등 6과목으로 구성되며, 1년짜리 강의코스이다.

AITI 시험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이와 유사한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반면 FITI 시험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⑥ 이탈리아: Associazione Nazionale Tributaristi Italiani(이탈리아 조세협회)<sup>60)</sup>

□ 협회의 연혁

1949년 6월 13일 로마에 설립되었으며, 지방 협회를 하위조직으로 갖고 있다. 지방 협회의 경우 대표적인 卅의 도시마다 설치되어 있다.

□ 회원가입 자격

일반회원으로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장 및 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관련 실무 경험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세무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60) 諸外國の税理士制度(1994) pp. 250~260

자, 공무원이나 판사 등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회원 이외에도 명예회원제도가 있는바, 세법을 특별히 연구하는 대학교수, 판사, 고급 공무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조세전문가의 명칭과 업무범위

이탈리아에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국가공인자격증제도가 없다. 즉, 특별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세무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탈리아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에는 Dottore Commercialista(학위 회계사), Ragioniere Colleggiato(회계사), Avvocati(변호사), Notai(공증인) 등이 있다. 학위회계사와 회계사의 업무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보수규정상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모든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인은 부동산의 등록, 건물의 등기 측량 업무 등을 주로 하되,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평가 등의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다. 장부기장 업무의 경우 대부분 회계사가 하고 있고, 조세소송 대리 업무의 경우 학위회계사와 회계사, 변호사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가 학위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세소송 업무를 의뢰하고 있고, 대부분의 논쟁이 세무서와의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⑦ 라트비아: Latvijas Nodokļu Konsultantu Asociācija(Latvian Tax Consultant Association)<sup>61)</sup>

#### □ 협회의 연혁

조세전문가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직업인 윤리 및 전문가 활동을 규율하는 문서들을 제정하기 위해 2001년 1월 26일 설립됐다. 조세상담가, 변호사, 감사인 등이 설립멤버로서 참여하였으며, 설립 이후 새로운 회원들을 계속 가입받아 현재 100개 이상의 회원이 있다. 대부분의 회원이 라트비아의 대형 회계법인인데, 라트

61) <http://www.lnka.lv/index.php?menu=0&lang=3>

비아의 경우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 회원 가입요건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서(motivation letter)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세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라트비아 또는 해외에서 경제학이나 세법 분야의 고등교육 학위를 받아야 함.

□ 조세전문가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의 제출

현재 공인조세전문가(Certified Tax Consultant)에 관한 법률 초안이 Saeima 예산 및 재정(세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재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중에 있다. 이 법률 초안에는 공인조세전문가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업무의 기본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⑧ 몰타: Malta Institute of Taxation<sup>62)</sup>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양 부문의 조세 실무자 연합으로 1995년 설립됐다. 몰타에는 특정한 조세전문가 자격증이 없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변호사 또는 회계사이며, 국세청의 고위 공직자 역시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인 자격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⑨ 포르투갈: Associação Portuguesa de Consultores Fiscais(Portuguese Association of Tax Consultant)<sup>63)</sup>

□ 협회의 연혁

1997년 조세 분야에 공통의 관심과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만든 민간협회이다.

62)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76>

63)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79>

#### □ 회원가입 요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법정 감사인, 경제학자(economist) 자격증을 소지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누구나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 회원에게 보장되는 배타적인 권리는 없다. 협회의 향후 추진 과제 중 하나는 회원을 위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 ⑩ 슬로바키아 공화국: Slovenská komora danových poradcov(Slovak Chamber of Tax Adviser)<sup>64)</sup>

#### □ 협회의 연혁

비영리·비정부 단체로서 특별법 78/1992 Coll.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증 발급 권한을 갖고 있다.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249/1994 Coll., 101/1995 Coll., 378/1996 Coll.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전문가 윤리규정이 존재하는바, 여기에는 고객 및 과세당국, 그리고 다른 조세전문가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의 업무와 행동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담겨 있다. 협회 규정이나 조세전문가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1992년 협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에는 회원이 88명에 불과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여 633명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법인 회원 48개가 포함되어 있다.

#### □ 회원가입 요건

전문지식과 윤리를 포함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세무 분야에서 장기의 경력을 갖춘 조세전문가여야 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⑪ 슬로베니아: Drustvo Davenih Svetovalcev Slovenije<sup>65)</sup>

1993년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모든 회원이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아직까지 조세전문가가 별도의 전문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협회

64)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81>

65)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280>

회원들이 회계사, 조세 또는 기업 문제에 관한 조연자, 감사인, 변호사 등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⑫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2개의 조세전문가 단체가 CFE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Asociación Española de Asesores Fiscales(Spanish Association of Tax Professional)<sup>66)</sup>

1967년 설립되었으며 1,500명 이상의 조세전문가가 모여 있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조세협회이다.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회원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협회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간물이나 세미나, 정보 교환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州法の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게 세법의 제·개정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Registro de Economistas de Asesores Fiscales

조세전문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1988년 3월 만들어진 스페인 경제협회 일반 위원회(General Council of Colleges of Economists in Spain)의 특별단체이다. 현재 4,200명 이상의 조세전문가가 등록되어 있고, 31개의 스페인 경제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⑬ 스위스: Treuhand-Kammer Schweizerische Kammer der Wirtschaftsprüfer, Steuerexperten und Treuhandexperthen(Swiss chamber of the chartered accountants, tax experts and trust experts)<sup>67)</sup>

감사, 회계자문, 세무자문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위한 동업자 단체로서

66)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6](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6)

67)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14>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전문직업인의 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 ⑭ 네덜란드

네덜란드에는 2개의 조세전문가 단체가 CFE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De Nederlandse Federatie van Belastingadviseurs(Dutch Federation of Tax Advisers)<sup>68)</sup>

1954년 설립되었으며, 협회 회원이 되면 Federatie-Belastingadviseur(FB) 자격증이 주어진다. 학술대회 및 6년짜리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Leiden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급 세법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테르담의 Erasmus 대학에 유럽 세법에 관한 특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협회의 회원이 되면 전문가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De Nederlandse Orde van Belastingadviseurs(Dutch Association of Tax Advisers)<sup>69)</sup>

1954년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조세전문가 협회이다. 동 협회에는 4,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전문기술, 그리고 윤리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조세전문가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모든 대학에 세법(tax law) 및 세무경제(tax economics)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강좌 중 하나 이상을 수료해야 하며, 업무 시간의 70% 이상을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처음 3년 동안 준회원이 되며, 이 기간 동안 조세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협회에서

68)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8](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8)

69) [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9](http://european-tax-adviser.com/wordpress/?page_id=419)

실시하는 전문가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한편 회원이 되면 전문직업인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전문직업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문직업인의 명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아시아 및 호주지역

#### 가. 일본

##### 1) 개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무사제도를 갖고 있다. 税務士 대신 税理士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어야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표 Ⅲ-13〉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무사제도 비교

일 본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이나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세리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과목합격이 인정되며, 폭넓은 시험과목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이나 경력 등에 의한 시험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고,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교육기간이 2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장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의 실무교육기간을 두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며, 세리사 등록을 하면 세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li> <li>• 특히, 일본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외국 공인회계사에게 세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소송 과정에서 보좌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소송 과정에서 의견진술권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는 합명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물적 요건의 제한 없이 설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한회사 형태이며,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 인가</li> </ul>

## 2) 세무사의 자격요건

### 가) 자격부여요건<sup>70)</sup>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 자격을 갖는다.

- ① 세리사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과목 전부 면제자
- ② 변호사(변호사 자격자 포함)
- ③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자격자, 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일본의 회계법령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무총리에게 자격을 인정을 받아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외국 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된 자 포함)

세리사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과목 전부 면제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만으로도 세무대리 업무 수행 및 세리사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세리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표 III-14〉 세리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구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세리사 명칭 사용
	실무교육	등록요건	
세리사시험 합격자, 시험과목 전부 면제자	2년간의 실무교육	의무사항(세리사명부)	가능
공인회계사	없음(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의무사항(세리사명부)	세리사명부에 등록하면 가능
변호사	없음(변호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선택사항	세리사명부에 등록하면 가능

70) 세리사법 제3조

나) 결격사유

i) 미성년자, ii) 성년피후견인과 피보좌인, iii)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iv)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세리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세리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세리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미성년자
- ② 성년피후견인(종래의 금치산자) 또는 피보좌인(종래의 준금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④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세리사법의 규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세리사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자 또는 국세범칙단속법(지방세법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나 관세법(톤세법 및 특별톤세법의 규정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계되는 통고처분 제외)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또는 그 통고의 취지를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및 세리사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⑦ 징계처분에 의해 세리사 업무 수행이 금지됐고,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⑧ 국가공무원법, 국회직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⑨ 변호사법 또는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사회보험노무사법 또는 부동산의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에 의해 변호사회에서 제명, 공인회계사 등록 말소, 변리사, 사법서사 또는 행정서사의 업무금지, 사회보험노무사의 실격 처분 또는 부동산감정사의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⑩ 세리사 자격 또는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 세리사 등록이 거부 또는 취소되는 경우로서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세무사 시험제도<sup>71)</sup>

#### 가) 특징

학력이나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회의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마다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다양한 과목 면제제도를 두고 있고, 한 번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후 계속하여 시험을 면제하여 준다(과목합격제도).

#### 나) 응시자격<sup>72)</sup>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세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등은 이러한 제한 없이 세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1) 세리사법 제6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72) 세리사법 제5조

〈표 Ⅲ-15〉 일본의 세리사 시험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학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을 수료한 자</li> <li>• 국세심의회가 법률학 또는 경제학에 관해 대학이나 고등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자</li> </ul>
경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계기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 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관공서에서 사무 또는 기타 관공서에서 국세(관세, 톨세, 특별톨세 제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li> <li>- 행정기관에서 회계검사, 금융검사 또는 회사 기타 단체의 경리에 관한 행정사무<sup>1)</sup></li> <li>-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한 금융법인에서 대출 기타 자금의 운용(대출자의 경리에 관한 검사 포함)에 관한 사무<sup>2)</sup></li> <li>- 법인(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특별회계 포함)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회계에 관한 사무<sup>3)</sup></li> <li>-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업무 보조사무</li> <li>-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부동산감정사<sup>4)</sup></li> </ul> </li> </ul>
다른 시험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시험 합격자</li> <li>• 공인회계사<sup>5)</sup>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해당 시험이 면제되는 자(해당 시험과목 전부에 대해 시험이 면제되는 자 포함)</li> </ul>

주: 1) 세리사법시행령 제2조

- ① 회계검사원의 직원이 행하는 조세(관세, 톨세, 특별톨세 제외) 수입에 관한 검사사무
- ② 지방공공단체의 감사위원 또는 보조직원이 행하는 조세수입에 관한 검사사무
- ③ 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포함)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회계에 관한 사무와 관련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검사사무
- ④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행하는 운용상대에 대한 검사사무
- ⑤ 은행법 기타 법률에 따른 검사사무로서 시행세칙에서 정한 것
- ⑥ 증거거래법 기타 법률에 따른 범칙사건의 조사사무로서 시행세칙에서 정한 것
- ⑦ 금융기관재건정비법 또는 기업재건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정비계획서 또는 최종처리 방법서의 심사사무

2) 자금의 대출 또는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행하는 대출상대 또는 투자 상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 심사업무, 당해 심사업무를 포함하는 자금의 대출 또는 유가증권 투자 관련 사무를 말함(세리사법시행령 제3조).

3) 대차대조표 계정 및 손익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특별한 판단이 필요 없는 기계적인 사무 제외)를 말함(세리사법시행령 제1조의 3).

4) 세리사법시행령 제5조

5) 일본의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1차 시험(단답식 시험)과 2차 시험(논문식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① 1차 시험과목: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기업법

② 2차 시험과목: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기업법, 세법, 경영학·경제학·민법·통계학 중 한 과목

### 다) 시험과목

세리사 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 일본의 세리사 시험과목

구분	출 제 과 목
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3과목(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중 어느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li> <li>- 법인세법</li> <li>- 상속세법</li> <li>- 소비세법 또는 주세법 중 1과목</li> <li>- 국세징수법</li> <li>- 지방세법 중 도부현민세(도민세 포함) 및 시읍면민세(특별 구민세 포함) 관련 부분 또는 지방세법 중 사업세 관련 부분 중 1과목</li> <li>- 지방세법 중 고정자산세 관련 부분</li> </ul> </li> </ul>
회계학	부기론 및 재무제표론

### 라) 시험면제<sup>73)</sup>

i)세법이나 회계학 분야의 교수 등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ii)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iii)세무행정경력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로서 필요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73) 세리사법 제8조

〈표 Ⅲ-17〉 일본의 세리사 시험 일부 면제 규정

구분	자 격	면제과목
교수 등으로 3년 이상 재직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① 대학 등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의 직 에 재직할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 되는 자 ②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세법
	① 대학 등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의 직에 재직할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 되는 자 ②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회계학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①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②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합격자	회계학
세무행정 경력자	① 관공서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또는 주세의 부 과 또는 이들 국세에 관한 법률입안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자 ② 관공서에서 ①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 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 되는 자	세법 중 국세
	① 관공서에서 도부현민세(도민세 포함), 시읍면민세(특별구민세 포함), 사업세 또는 고정자산세 부과 또는 이들 지방세에 관한 법률 입안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되는 자 ② 관공서에서 ①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 되는 자	세법 중 지방세
	① 관공서에서 도부현민세(도민세 포함), 시읍면민세(특별구민세 포함), 사업세 또는 고정자산세 부과 또는 이들 지방세에 관한 법률 입안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 되는 자 ② 관공서에서 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 간이 통산하여 20년 이상 되는 자	세법
	다음에 계기한 자로서 관공서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관 리 또는 감독하는 직무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재직할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되는 자 중 국세심의회가 정한 연수를 수료한 자 ① 관공서에서 국세 또는 도부현민세(도민세 포함), 시읍면민세(특별구 민세 포함), 사업세 또는 고정자산세 부과 또는 이들 지방세에 관한 법률 입안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3년 이상 되는 자 ② 관공서에서 기타 지방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8 년 이상 되는 자 ③ ①에 규정하는 기간×28/23+②에 규정하는 기간이 28년 이상 되는 자	회계학

이 외에도 세법(또는 회계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세무사시  
험에서 세법(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서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  
은 자가 당해 연구가 세법(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것이라고 국세심의

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당해 1과목 이외의 세법(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sup>74)</sup>

#### 4) 실무경험

세리사 시험합격자 또는 시험과목 전부 면제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실무경험이란 조세 또는 회계 관련 사무<sup>75)</sup> 경험을 의미하는바,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 결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모두 가능하다. 실무경험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세리사회에서 등록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5) 세무사 등록<sup>76)</sup>

세리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리사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 등록이 불가능하다.

-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변호사, 외국법사무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가 정지된 자 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가 금지된 부동산감정사로서 현재 그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② 보수를 받는 공직(국회 또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회원직 및 비상근직 제외)에 있는 자
- ③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나 면하려고 한 경우 또는 면하게 하였거나 면하게 하려고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④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환급받게 하였거나 환급받게 하려고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4) 세리사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75) 대차대조표 계정 및 손익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는 회계 관련 사무(특별한 판단이 필요 없는 기계적인 사무 제외) (세리사법시행령 제1조의 3)

76) 세리사법 제20조 및 제21조, 제24조

- ⑤ 국세, 지방세 또는 회계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세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 ⑦ 세리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세리사의 직책에 비추어 세리사로서 적격성이 결여된 자

일본의 경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 등록 업무를 주관하며, 세리사명부 역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비치되어 있다.

#### 6) 세무사의 업무범위<sup>77)</sup>

일본의 세리사는 조세불복, 세무조정, 세무상담, 기장대행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보좌인으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

〈표 Ⅲ-18〉 일본 세리사의 업무 범위

구분	업 무
조세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관공서(세관관서 제외, 국세불복심판소 포함)를 상대로 조세 법령이나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불복청구(이하 “신고 등”)<sup>1)</sup>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것</li> <li>• 당해 신고 등이나 세무관공서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주장이나 진술에 대하여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것</li> </ul>
세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에 관계되는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불복청구서,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 규정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세무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서류 대신 전자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전자기록 포함)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작성하는 것</li> </ul>
세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에서 규정하는 주장이나 진술 또는 신고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조세의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li> </ul>
기장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세리사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리사 업무에 부수하여 재무 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작성 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li> </ul>
조세소송에서 의견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보좌인으로서 소송대리인(변호사)과 함께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음</li> <li>• 이러한 진술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단,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진술을 바로 취소·경정하는 경우 제외)</li> </ul>

주: 1)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함, 주세법 제2장의 규정과 관련 있는 신고·신청·불복행위 제외.

77) 세리사법 제2조 및 제3조

## 7)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요건

### 가) 법적형태<sup>78)</sup>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는 합명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 나) 설립요건<sup>79)</sup>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이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사법서사·행정서사·사회보험노무사·부동산감정평가사 자격이 정지되어 세리사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정지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보수가 있는 공직에 취임하여 세리사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③ 고의로 진실한 사실에 반하여 세무대리 또는 세무서류를 작성하였거나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나 환급받는 일을 지시·상당하여 세리사업무의 정지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④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허위 기재하였거나 세리사법,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정지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⑤ 세리사법인이 세리사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게 운영하여 해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 이전 30일 내에 당해 세리사법인의 사원에 해당했던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3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78) 세리사법 제48조의 11

79) 세리사법 제48조의 4

8)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의무

가) 세무사의 의무

세리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세리사법 제4장(세리사의 권리와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9〉 일본 세리사의 의무

의무	내 용	근거법령
탈세상담 등의 금지	•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제·환급 받는 일을 지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세리사법 제36조
신용실추 행위 금지	• 세리사의 신용이나 품위를 실추하는 행위 금지	세리사법 제37조
비밀엄수	• 정당한 이유 없이 세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도용하여서는 안 됨	세리사법 제38조
회칙준수	• 소속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함	세리사법 제39조
연수	• 소속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시행하는 연수를 받고,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세리사법 제39조의 2
사무소의 설치	• 세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한 명의 세무사가 둘 이상의 세리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세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세리사법 제40조
장부작성	• 세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위탁자별로 또는 건마다 세무대리, 세무 서류의 작성 또는 세무 상담의 내용 및 그 전말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함	세리사법 제41조
사용인 감독	• 세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감독해야 함	세리사법 제41조의 2
조언의무	• 위탁자가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면제 받고 있는 사실,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허위기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토록 조언해야 함	세리사법 제41조의 3
업무의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에서 세리사가 된 자는 이직 후 1년 동안 이직 전 근무했던 업무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세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세리사법 제42조

## 나) 세무법인의 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회칙준수, 장부작성, 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행위, 조연의무 등은 개인 세리사뿐만 아니라 세리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80)</sup>. 세리사법인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0〉 일본 세리사법인의 의무

의무	내 용	근거법령
탈세상담 등의 금지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제·환급받는 일을 지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세리사법 제36조
신용실추 행위의 금지	세리사의 신용이나 품위를 실추하는 행위 금지	세리사법 제37조
회칙준수	소속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함	세리사법 제39조
장부작성	세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위탁자별로 또는 건마다 세무대리, 세무 서류의 작성 또는 세무상담의 내용 및 그 전말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함	세리사법 제41조
사용인 감독	세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감독해야 함	세리사법 제41조의 2
조연의무	위탁자가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허위기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토록 조언해야 함	세리사법 제41조의 3
회원의 상주	세리사법인의 사무소에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리사회 회원이 상주해야 함	세리사법 제48조의 12
법인의 성립 및 정관변경 신고	법인의 성립사실, 정관변경 등에 관한 신고의무	세리사법 제48조의 11 및 13
경업의 금지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그 세리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해서는 안 됨	세리사법 제48조의 14
업무 집행방법	세리사가 아닌 자가 세리사 업무를 행해서는 안 됨	세리사법 제48조의 15

80) 세리사법 제48조의 16

## 9) 징계사유

### 가) 세리사의 징계사유<sup>81)</sup>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경고, 1년 이내 세리사업무 정지, 세리사업무 금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 Ⅲ-21〉 일본 세리사의 징계사유

징계사유	징계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리사가 고의로 진실에 반하여 세무대리 또는 세무서류를 작성했을 때</li> <li>•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li> </ul>	1년 이내 세리사 업무 정지 또는 세리사업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사항, 조사사항 등을 기재하여 첨부하는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li> <li>• 세리사법, 국세 또는 지방세법 위반</li> </ul>	경고, 1년 이내 세리사업무 정지 또는 세리사업무 금지

### 나) 세리사법인의 징계사유<sup>82)</sup>

세리사법인이 세리사법 또는 동법시행령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대신이 경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산 등을 명할 수 있다.

## 10)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

일본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자는 ① 변호사, ②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이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1) 세리사법 제44조 내지 제46조

82) 세리사법 제48조의 20

〈표 III-22〉 일본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리사의 업무범위

구분	업 무
변호사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사건, 비소송사건, 심사청구, 이의신청, 재심사 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li> <li>• 변리사 및 세무사의 행위를 당연히 행할 수 있음</li> </ul>
공인회계사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 업무</li> <li>• 재무 서류의 작성, 재무에 관한 조사·입안, 재무에 관한 자문</li> </ul>
세리사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대리, 세무서류 작성, 세무상담, 부수업무, 세무서송대리업무 중 일부</li> </ul>

주: 1) 변호사법 제3조  
 2) 공인회계사법 제2조  
 3) 세리사법 제2조 및 제3조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가 고유 업무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리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리사명부에 등록하고, 일본세리사연합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가 조세소송 행위 중 일부를 대리할 수 있다.

〈표 III-23〉 일본의 세리사 등록자 및 세리사법인 현황(2007년 10월말 기준)

(단위: 명, 개)

지회	세리사 등록자	세리사법인	
		주사무소	지점
東京	19,433	463	126
東京地方	4,573	82	33
千葉 県	2,397	37	26
關東信越	7,151	153	76
近畿	13,378	224	84
北海道	1,989	62	31
東北	2,650	45	19
名古屋	4,066	110	51
東海	4,114	77	48

〈표 Ⅲ-23〉의 계속

지회	세리사 등록자	세리사법인	
		주사무소	지점
北陸	1,307	37	18
中国	2,995	52	18
四国	1,539	27	20
九州北部	2,842	57	25
南九州	1,908	33	13
沖縄	338	5	3
합계	70,680	1464	591

주: 세리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숫자 포함  
 자료: 일본 세리사 연합회(www.nichizeiren.or.jp)

## 나. 중국

### 1) 개요

중국의 경우 “주책세무사(注册稅務師)”라고 하여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996년 국가세무총국과 인사부가 공동으로 만든 “세무사자격관리조례”가 있긴 하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 형태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주책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세무(경제)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세행정 경력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또는 시험면제 규정은 없다. 세무사가 개인 자격으로 세무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3명 이상의 세무사가 모인 법인 형태여야 하며, 유한세무법인과 합동세무법인 두 종류의 세무사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법률상으로는 인민법원의 승인을 얻어 세무사 역시 조세소송 대리 업무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절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조세소송 대리 업무가 불가능하며 그 실적 또한 전무하다.

## 2) 세무사제도의 창설<sup>83)</sup>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무대리인(tax agent)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세무 행정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일부 지방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시도했다. 1992년 9월 제7차 전국인민대회 제27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세징수관리법(The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ax Administration and Tax Collection)”이 통과 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신을 위해 세무 문제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세무대리인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향후 발전을 위한 법률적인 기초를 제공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1994년 9월 국가세무총국이 조세징수관리법에 근거하여 “세무대리인 조례(Interim Regulations on Tax Agency)”를 제정했고,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세무대리인제도가 도입됐다. 1996년 11월에는 인적자원부 장관과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세무사자격관리조례(Interim Regulations on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Registered Tax Agents)”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세무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세무사제도의 새로운 발전 시기가 도래했다.

## 3) 세무사의 자격요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4) 세무사 시험제도

### 가) 특징<sup>84)</sup>

시험과목에는 세법(1), 세법(2), 조세관련법, 재무회계, 세무대리 실무 등 5과목이 있다. 시험 형태에는 회전방식(rolling pattern)과 非회전방식(no rolling pattern),

83) 중국주책세무사협회 홍보자료

84) 중국주책세무사협회 홍보자료

이 있다. 회전방식을 채택하면 3년 내에 5과목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非회전방식을 채택하면 시험 과목이 2과목(조세관련법, 세무대리 실무)으로 줄어드는 대신 한 번에 동시에 합격해야 한다.

나) 응시자격<sup>85)</sup>

대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세무(경제) 관련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 시험면제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세행정 경력 공무원 등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규정은 없다.

5) 세무사 등록<sup>86)</sup>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인증서(Certificate of Registered Tax Agent)가 주어진다. 세무사인증서를 받은 자가 ‘세무대리인 직업허가증(Career License as Tax Agent)’ 또는 ‘세무대리인 非직업허가증(Non-career License as Tax Agen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세무대리인 관리센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인증서를 받은 자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직업허가증(Career License as Tax Agent)’이 필요하다. 세무사가 개인 자격으로 세무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반드시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세무사의 업무범위

“세무사자격관리조례”에 따르면 세무사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위임을 받

---

85)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2006. 10. 13.)」, 계간 『세무사』 2006년 겨울호 p. 128, 한국세무사회

86) 중국주책세무사협회 홍보자료

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sup>87)</sup>

- ① 세무등기, 세무등기 변경 및 취소
- ② 세금계산서 구입을 위한 포맷 프로세싱(특별부가가치세 제외)
- ③ 세무신고 및 원천징수 서류 제출
- ④ 각종 세무서류 작성
- ⑤ 세금납부 및 환급 처리업무
- ⑥ 세금납부 현황 확인
- ⑦ 기장대리
- ⑧ 세무상담
- ⑨ 세무행정 검토
- ⑩ 기타 국가세무총국에서 정한 업무 등

그러나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배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 없다. 따라서 세무조정 업무 역시 신의·성실에 따라 하되,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모두 가능하다.<sup>88)</sup>

## 7) 세무법인의 법적형태 및 설립요건

### 가) 법적형태

세무사사무소에는 유한세무법인(Limited Liability Tax Agencies)과 합동세무법인(Partnership Tax Agencies) 두 종류가 있다. 중국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세무사사무소 설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3명 또는 5명 이상의 세무사가 모인 법인 형태여야 한다<sup>89)</sup>.

87) 중국주책세무사협회 홍보자료

88)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2006. 10. 13)」, 계간 『세무사』 2006년 겨울호 p. 125, 한국세무사회

89)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2005. 7. 18)」, 계간 『세무사』 2005년 여름호 p. 132, 한국세무사회

나) 설립요건<sup>90)</sup>

① 유한세무법인

유한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명 이상 되어야 한다.
-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한다.
- 등록자본금이 30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

② 합동세무법인

합동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명 이상 되어야 한다.
-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한다.
- 등록자본금이 10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

다) 설립절차

중국세무자순협회에서 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8)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sup>91)</sup>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임하는 자는 누구나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역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업무 간에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세무등기, 세무기장, 세무자문, 세수계획 등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평가(驗資), 장부조사(查帳), 재무회계감사보고서(年度財務會計 監察報告書) 업무 등은

90) 중국주책세무사협회 홍보자료

91) 「중국주책세무사협회의와 의 간담회(2005. 7. 18)」, 계간 『세무사』 2005년 여름호 p. 127~128, 131,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서 세무사는 할 수 없다. 변호사(律師)의 경우 주요 세무회계 방면(예를 들면 세무대리, 세무자문, 세무전략 수립 등)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이나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등기, 세무기장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없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증(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개의 사무소에서 세무사 업무와 회계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말 현재 중국에는 약 2,800개의 세무사사무소가 있고, 약 62,000명의 세무사가 있다. 매년 약 5,000명 정도 세무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변호사는 약 11만 명 정도이다. 2002년부터 국가에서 주관하여 일괄적으로 사법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과 졸업자에 한해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사법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율사), 법관, 검찰관이 되며, 매년 합격률은 10% 정도이다. 매년 약 2만명 정도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공인회계사는 약 14만명 정도이다. 그 중 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6만명 정도이며, 나머지 7만명은 개업을 하고 있지 않다. 매년 합격률은 10% 정도이며, 매년 만명씩 회계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중국에는 4,900개의 회계사사무소가 있다(유한공사 82%, 합명회사 18%).

중국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민사소송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 역시 민사조세소송 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行政復議) 업무 등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만 가능하며, 세무사는 할 수 없다.<sup>92)</sup>

중국의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상의 대리를 위하여 1인 또는 2인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바, 변호사, 사회단체, 소송을 제기한 자와 가까운 친척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자(세무사 포함)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사 역시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법률이나 사법기관 내의 절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세무

92)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 계간 『세무사』 2005년 여름호 p. 127, 한국세무사회

사가 조세소송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 실적 또한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조세소송대리의 경우 주로 변호사를 이용하고 있다.<sup>93)</sup>

## 다. 홍콩<sup>94)</sup>

### 1) 개요

홍콩에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국가공인자격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홍콩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다.

### 2) 각 조세전문가의 업무 개요

공인회계사의 경우 영국과 마찬가지로 감사와 세무신고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공인회계사협회가 발급하는 개업증명서(Practising Certificate)<sup>95)</sup>를 가진 자는 홍콩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조세소송 대리업무 등은 변호사의 독점 영역이나, 조세불복 신청 업무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변호사(solicitor) 역시 세무 업무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바, 부동산 양도와 관련 있는 인지세 면제 신청의 경우 공인회계사보다 사무변호사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93)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2006. 10. 13)」, 계간 『세무사』 2006년 겨울호 p. 125, 한국세무사회

94) 諸外國の税理士制度(1994) p. 118~120

95) 개업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업증명서를 보유하면 자신을 CPA(practising)라고 지칭할 수 있다.

- ① 4년간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취득 후 또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회계단체의 회원이 된 후,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 실무경험 중 상당 부분이 회계감사 분야에서 쌓은 것이어야 한다.
  - 신청일 직전 3년 내에 홍콩에서 최소한 1년 이상 회계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② 홍콩에서 통상적인 거주자(ordinarily resident)에 해당해야 한다.
- ③ 국내법 및 세법 시험을 포함하여 협회에서 정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 ④ 파산상태에 있지 않고, 자발적인 채권자 조정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 라. 호주

### 1) 개요

호주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Tax Agent)으로 등록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 관해서는 소득세평가법 1936(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이하 “ITAA 1936”)의 Part 7A와 소득세규정 1936(Income Tax Regulations 1936: 이하 “ITR 1936”)의 Part 9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별도의 법률을 두지 않고, 세법에서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을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무대리인 등록 업무의 경우 ITAA 1936에 따라 만들어진 “세무대리인위원회(Tax Agents’ Board)”라고 하는 국가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각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때 3명의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고위 관리여야 한다<sup>96)</sup>.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좋은 명성과 성격, 성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도의 시험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파트너십이나 회사 형태의 세무대리인 법인 설립 역시 가능하다. 변호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회계사 협회 회원 역시 납세자를 위해 BAS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등록이 필요 없다.

### 2)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

#### 가) 자격부여요건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좋은 명성과 성격, 성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학 또는 법학 분야의 학위 또는 졸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세무대리인의 종업원(또는 세무대리인으

96) <http://www.tabd.gov.au/content.asp?doc=/content/80188.htm&>

로 등록되어 있는 파트너십의 파트너)으로 일정 기간 이상 세무 관련 업무<sup>97)</sup>에 종사해야 한다.

①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sup>98)</sup>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학위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달라진다.

〈표 Ⅲ-24〉 호주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한 학력 및 경력요건

학위의 종류	학력요건	경력요건
회계학 학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이상의 회계학 코스와 18개월 이상의 호주 소득세법 및 상법 코스 수료</li> </ul>	직전 5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관련 업무 종사
법학 학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또는 주의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학위취득 요건 충족</li> <li>법률 코스 중 회계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전문대학에서 회계원리 과목 등을 수료해야 함.</li> <li>세무대리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호주 소득세법 코스 수료</li> </ul>	직전 5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기술전문대학의 졸업장 또는 인증서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갖춘 기타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회계학 코스와 세무대리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호주 소득세법 코스를 수료하고 회계학 분야의 졸업장(diploma) 또는 인증서(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함</li> </ul>	직전 5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해외 학위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학위가 호주 대학에서 3년 이상의 회계학 코스와 18개월 이상의 상법 코스를 수료한 것과 동등함을 입증해야 함</li> <li>호주 소득세법 코스를 수료해야 함</li> </ul>	직전 5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관련 업무 종사

97) 광범위한 소득세 신고서 작성·검토업무, 이러한 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불복서류의 작성 또는 검토업무, 소득세 신고 및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업무 등

98) ITR 1936 section 156, ITAA 1936 section 251BC(1)

그러나 공인받은 전문직 협회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 또는 회계원리 및 호주 소득 세법 코스를 수료한 자가 직전 10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학력 요건과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좋은 명성과 성격, 성실성<sup>99)</sup>

신청자가 좋은 명성과 성격을 갖고 있고 성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다.

-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 조회서(character reference)
- 유죄 판결(특히 사기, 절도와 관련하여)

### 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① 면책되지 않은 파산상태<sup>100)</sup>
- ② 중대한 조세 범죄<sup>101)</sup>
  - 과거 5년 동안 중대한 조세 범죄를 행한 적이 있는 자
  -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중대한 조세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포함)

99) ITAA 1936 section 251JA(1)

100) ITAA 1936 section 251JA(1)

개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책되지 않은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를, 파트너십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면책되지 않은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를,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청산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101) Part III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251A Part VIIA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Part IX of the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 19B Crimes Act 1914 [중대한 조세범죄의 정의]

① 조세의무와 관련하여 형법 1914(Crimes Act 1914)의 특정 항목을 위반한 자

② 조세행정법 1953(Tax Administration Act 1953)의 Part III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죄으로 \$2,000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 3) 세무대리인 등록

#### 가) 등록절차<sup>102)</sup>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수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부속서류에는 경력증명서, 2개의 성격 조 회서(two character references), 학위증명서 사본, 개인 신상명세서, 법인설립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장 최근의 호주 증권 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신고서 사본 등이 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sup>103)</sup>를 지불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대리인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성격 조회서의 신원 보증인에게 연락(항상 연락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연락)
- 개인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호주 국세청에 확인
- 학력 및 경력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범죄 행위 이력, 현재 형 집행이나 면책되지 않은 파산 상태 등에 있는지를 확인

등록이 확정되면 세무대리인위원회에서 세무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록 인 증서를 보낸다. 한 번 등록이 승인되면 3년 동안 유효하며,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등록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8일 내에 행정 이의신청 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 나) 세무대리인 등록이 필요 없는 자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102) <http://www.tabd.gov.au/content.asp?doc=/Content/84346.htm&placement=TABD/REG>  
<http://www.tabd.gov.au/printcontent.asp?doc=/content/84348.htm>

103) 개인: \$400, 한 명의 지명자를 포함하는 파트너십과 회사: \$400, 추가적인 지명자: \$400

- ①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자를 위해 BAS 서비스<sup>104)</sup>를 제공하는 경우
  - 공인받은 전문직 협회<sup>105)</sup> 회원(수습 기간중에 있는 회원 또는 퇴임 회원 제외)
  -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고용주를 위해 BAS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리직원 (bookkeeper)
  - 오로지 원천징수의무(PAYG withholding obligation) 이행을 위해 고용주에게 급여지급 서비스 payroll service)를 제공하는 자
  - BAS 서비스가 간접세법이 적용되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sup>106)</sup> 허가받은 관세 중개인(licensed customs broker)

#### 다)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 \$22,000까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①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 ② 자기 자신을 세무대리인으로 지칭하는 행위
- ③ 자신이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104)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보고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현황보고서 (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BAS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ITAA 1936 section 251L(7)).

- ① BAS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승인받은 양식을 작성·제출하는 서비스
- ② BAS 규정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 ③ BAS 규정과 관련하여 세무 감독관이나 세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하는 서비스

105) ITAA 1936 section 251LA

- ① 회계사 협회: The Association of Taxation & Management Accountants, CPA Australia,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 ② 조세 협회: Taxation Institute of Australia

106) 예를 들면 GST, Wine equalisation tax, Luxury car tax

#### 4) 세무대리인의 업무범위<sup>107)</sup>

세무대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① 세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 있는 신고서, 통지, 보고서,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서비스
- ② 세법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 ③ 세법에 따른 과세, 판단, 통지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서비스
- ④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결정에 관해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서비스
- ⑤ 세무 감독관이나 세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하는 서비스

#### 5)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및 설립요건

##### 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회사(company),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다.

##### 나)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 ① 파트너십(partnership)의 설립요건<sup>108)</sup>

파트너십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개인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인으로 파트너십의 최초 대표자(original nominee)로 지정된 파트너가 존재해야 한다.
- 각 파트너가 자연인이고, 18세 이상이며, 좋은 명성과 성실성,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면책되지 않은 파산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 항상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대표자(nominee)<sup>109)</sup>로 등록돼야 한다.

107) ITAA 1936 Section 251L

108) ITAA 1936 Section 251JA(1)(b)

- 파트너에 해당하는 회사의 각 임원(executive officer)<sup>110)</sup>이 18세 이상이고, 좋은 명성과 성실성,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company)의 설립요건<sup>111)</sup>

회사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개인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최초 대표자(original nominee)로 지정된 종업원을 가져야만 한다.
- 이사가 의결권의 25% 이상을 수익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각 이사가 개인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의결권은 제 3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거나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해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sup>112)</sup>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을 의미한다).
- 청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 각 임원(executive officer)이 18세 이상이고, 좋은 명성과 성실성,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설립절차

개인으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제출서류상에 약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등록신청서와 필수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확정되면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록 인증서를

109) 등록 세무대리인은 종업원(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와 종업원)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만 한다. 등록 세무대리인의 대표자는 등록 세무대리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서류에 서명을 하고, 등록 세무대리인을 위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와 거래하는 종업원들을 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110) 임원이란 회사의 경영업무에 관련되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이사, 비서 등을 말한다.

111) ITAA 1936 Section 251JA(1)(c)

112)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개인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의 이사

보내준다. 세무대리인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5〉 세무대리인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호주)

구분	제출서류	비 고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li> <li>• 2개의 성격조회서</li> <li>• 학위증명서 사본</li> <li>• 사업자등록증(가능한 경우에만)</li> </ul>	
추가적인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li> <li>• 2개의 성격조회서</li> <li>• 학위증명서 사본</li> <li>• 개인 신상명세서</li> </ul>	
파트너십	• 개인 신상명세서	각 파트너, 회사 파트너에 해당하는 각 임원, 각 대표선임자
	• 2개의 성격조회서	각 파트너, 회사 파트너에 해당하는 각 임원, 각 대표선임자
	• 경력증명서	각 대표선임자
	• 학위증명서 사본	각 대표선임자
	• 사업자등록증	가능한 경우에만
	• 가장 최근의 ASIC 신고서	각 회사 파트너
회사	• 개인 신상명세서	각 이사, 임원 및 대표선임자
	• 2개의 성격조회서	각 이사, 임원 및 대표선임자
	• 경력증명서	각 대표선임자 및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 학위증명서 사본	각 대표선임자 및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 사업자등록증	가능한 경우에만
	• 가장 최근의 ASIC 신고서	신청회사
	• 법인설립증명서	신청회사

자료: 호주세무대리인위원회(<http://www.tabd.gov.au>)

## 6) 세무대리인의 의무<sup>113)</sup>

### 가) 세무대리인의 일반적인 책임

세무대리인이 되면 세무신고서 또는 불복청구서의 작성을 포함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득세 문제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이에 따른 수많은 책임 역시 이행해야 하는바, 세무대리인에게 기대되는 일반적인 책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신고서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② 세법 및 실무 개정 사항을 계속하여 업데이트해야 한다.
- ③ 고객 및 호주 국세청과의 관계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 ④ 세무대리인의 등록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 나) 구체적인 의무

#### ① 세무대리인위원회에의 고지의무

주소의 변경, 이름 또는 상호의 변경, 파산, 영구적인 사업 폐지, 등록소의 이전, 사업조직 · 대표자 · 회사 · 파트너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대리인위원회에 고지해야 한다.

#### ② 개인세금 문제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개인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자는 다른 납세자의 세무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세무대리인 업무 중지 또는 등록취소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3) <http://www.tabd.gov.au/content.asp?placement=TABD/RESP>

### ③ 신고서의 작성

세무대리인은 자신의 종업원, 등록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대리인파트너십의 파트너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 신고서 또는 불복서류의 작성, 세무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서비스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종업원의 신고서 작성 업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세무대리인은 종업원의 수행 업무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여기에는 문서의 출처 검토, 인터뷰 기술, 납세자에게 받은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되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 ④ 인증서의 등록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세무대리인 등록인증서가 발급된다. 이 인증서는 호주 연방의 자산이기 때문에 요청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위원회는 이 인증서를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하여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든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인번호가 부여되는바,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위원회 및 호주 국세청과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이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 ⑤ 고객에 대한 책임

세무대리인은 시의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고객의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회신의 전달, 전화 또는 서신에 대한 응답 등이 포함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세무 업무를 태만하게 하면 세무대리인위원회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업무중지 또는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전에 고객으로부터 기명날인이 있는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세무감독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서류 작성을 위해 준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임을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세무대리인 역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서류상의 진술서에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납세자가 준

정보에 따라 서류가 작성되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자신이 준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징구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세무감독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객의 과세평가 통지서가 세무대리인에게 송부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당해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고객의 서면동의 없이 자신의 계좌에 직접 환급액을 송금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 7) 징계사유<sup>114)</sup>

### 가) 세무대리인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위원회로부터 세무대리인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①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대리인의 등록 대표자가 아래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조세행정법 1953(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의 section 8N, 8T 또는 8U 위배
  - 세법과 관련하여 형법(Criminal Code) division 136 또는 137 위배
  - 범죄법 1914(Crimes Act 1914)의 section 6 위배
  - 형법(Criminal Code) section 11.1, 11.4 또는 11.5 위배
- ②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신고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위해 작성한 신고서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로서 당해 세무대리인이 거짓이란 사실을 몰랐거나 그의 태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세무대리인위원회에 입증하지 못한 경우
- ③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사업을 태만히 하였거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 ④ 세무대리인의 등록 대표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세자를 위해 소득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아닌 경우
- ⑤ 자연인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세자를 위해 소득

114) <http://law.ato.gov.au/atolaw/view.htm?locid='PAC/19360027/251K'#251K>

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아닌 경우

- ⑥ 자연인에 해당하는 파트너가 18세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좋은 명성과 성격, 성실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⑦ 회사에 해당하는 파트너의 임원이 18세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좋은 명성과 성격, 성실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⑧ 당해 회사의 임원이 18세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좋은 명성과 성격, 성실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나) 세무대리인 등록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위원회로부터 세무대리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① 자연인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면책되지 않는 파산 상태에 빠진 경우
- ② 자연인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영구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③ 당해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그만 두는 경우
- ④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과 관련하여 대표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파트너를 갖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파트너 중 한 명이 면책되지 않는 파산 상태에 빠진 경우
- ⑤ 회사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과 관련하여 등록 대표자를 갖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회사가 청산 상태에 빠진 경우
- ⑥ 파트너십 또는 회사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영구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8)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그 위상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세무대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나, BAS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없다. 또한 공인회계사 협회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이 직전 10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학력 요건과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07년 10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28,389명<sup>115)</sup>이다.

---

115) <http://www.tabd.gov.au/download.asp?file=/content/Downloads/TaxAgents.zip>

## IV. 세무사제도의 국제비교

### 1.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 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외에 세무 업무만을 전담하는 “세무사” 라는 별도의 조세전문가 자격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유럽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제도가 없는 국가가 많다. 세무사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대부분 회계사, 변호사 등이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제도의 존재 여부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1〉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비교

구 분		국 가
조세전문가 자격제도가 존재하는 국가	국가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서 자격증 부여	한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위스, 일본, 중국, 호주
	민간협회에서 자격증 부여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조세전문가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홍콩, 캐나다

위 표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등을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군에 분류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민간협회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협회 가입이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자는 해당 국가에서

조세전문가로서 그 지위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협회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세전문가가 협회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국가군에 분류했다.

## 나. 세무대리인을 지칭하는 명칭

한편 조세전문가 자격제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마다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서로 다른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명칭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2〉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명칭 비교

국 가	명 칭
한국	세무사(稅務士)
미국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
독일	세무사(Steuerberater), 세무대리사(Steuerbevollmaechtiger)
영국	CTA(fellow) 또는 FT II, CTA 또는 AT II, ATT
오스트리아	세무사(Steuerberater)
벨기에	세무사(Conseils Fiscaux)
체코공화국	세무사(Daňov ch poradci)
아일랜드	AITI, FITI, TMITI
라트비아	세무컨설턴트(Nodokļu konsultantu)
슬로바키아	세무사(daňov ch poradcov)
네덜란드	세무컨설턴트(Federatie-Belastingadviseur: FB)
일본	세리사(稅理士)
중국	주책세무사(注册稅務師)
호주	세무대리인(Tax Agent)

## 다.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사법”을 통해 세무사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② 세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하는 국가, 또는 ③ 법률이 아닌 협회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율하는 국가 등도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이나 업무범위, 권리와 의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규정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세무사제도를 이해하고, 외국세무사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국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3〉 각국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과 그 유형

구 분	국가	규 정
A. 별도의 법률 존재	한국	세무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미국	Treasury Circular 230
	독일	- 세무사법 - 세무사법시행령 - 근로소득세납세조합법시행령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방경제수탁직업법
	벨기에	회계사 및 세무사에 관한 1999년 4월 22일 법률(la loi du 22 avril 1999 relative aux professions comptables et fiscales)
	체코	세무 자문 및 세무사에 관한 법률 523(ACT 523 On Tax Counseling and the Chamber of Tax Advisors of the Czech Republic)
	슬로바키아	- 최초 규정: Act 78/1992 Coll. - 개정 규정: Act 249/1994 Coll., Act 101/1995 Coll., Act 378/1996 Coll.
	일본	- 세리사법(税理士法) - 세리사법시행령(税理士法施行令) - 세리사법시행규칙(税理士法施行規則) -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칙
B. 세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	호주	- 소득세평가법 1936(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의 Part 7A - 소득세규정 1936(Income Tax Regulations 1936)의 Part 9
C. 법률이 아닌 통칙으로 규율	중국	세무사자격관리조례
D. 협회 자체 규정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일본, 호주 등은 세무사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중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등에 비해 세무사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의 범위

### 가.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여야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별로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4〉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국가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누구나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li>예외: 연방조세업무 중 국세청에 대한 대리행위 → 등록대리인, 변호사, 회계사만이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에 대한 대리행위: 필요한 문서의 작성과 제출, 국세청과의 통신과 대화, 조정협의, 조세소송과 상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행위 등</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세무사, 세무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li>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인, 변리사 등: 제한적인 세무대리 업무 가능</li> <li>- 일상적인 영업거래의 기장 업무 등: 세무사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은 누구나 가능</li> </ul> </li> </ul>

〈표 IV-4〉의 계속

국가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세무사, 장부검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sup>1)</sup></li> <li>• 예외: 독립기장사의 경우 제한적인 세무대리업무 가능</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리사,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li>•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li>- 회계사: BAS service의 경우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가능</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홍콩, 캐나다 등은 누구나 세무서비스 제공 가능</li> </ul>

주: 1) 오스트리아의 경우 세무·회계·경영 및 경제 분야의 전문직업 영역을 “경제수탁사”라고 부름. 독립기장사, 세무사, 장부검사사, 공인회계사 등이 경제수탁사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각 직업별로 직무권한과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에 차등을 두고 있음.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독립기장사: 경제수탁직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업무
- ② 세무사: 독립기장사의 업무+조세 및 회계자문업무 등
- ③ 장부검사사: 세무사의 업무+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회계감사 업무 등
- ④ 공인회계사: 장부검사사의 업무+회계감사권과 행정법원에서 소송대리권 등 장부검사사의 경우 9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기존 자격자에 한해 업무 가능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국가들을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면 ① 특정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들과 ② 자격증과 관계없이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들로 나눌 수 있다.

### 나. 특정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

특정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호주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특정 세무업무에만 자격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다른 국가들은 연방세(또는 국세)이든 주세(또는 지방세)이든 관계없이 모든 세무 업무에 자격증이 요구되나, 미국의 경우 연방세 업무, 그 중에서도 특히 국세청에 대한 대리행위에만 자격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증에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호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이면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반면 호주의 경우 회계사가 BAS Service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공증인, 독립기장사 등과 같은 자격증 소유자에게 제한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다.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

자격증과 관계없이 세무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국가에는 영국,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홍콩, 캐나다 등이 있다.

이 국가 중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중국 등은 세무서비스 제공자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민간협회에서 세무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국가들의 경우 세무자격증이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세무서비스 제공자의 품질을 보증하고, 납세자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

#### 가. 개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질 높은 세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청자에게 세무 지식과 윤리 등을 테스트 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시험 응시자격에도 학력이나 전공 등과 같은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표 IV-5〉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

국가	시험응시 요건	자격증 취득 요건	
		실무경력 요건	시험통과 요건
한국	n/a	6월(또는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시험면제: 회계사, 변호사</li> </ul>
미국	n/a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시험면제: 5년 이상 세무행정 경력이 있는 국세청 공무원</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이나 전문대학졸업 &amp; 경제학 또는 법학 전공</li> <li>7년 이상 세무행정 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학력요건 면제</li> </ul>	2년(대학 졸업) 또는 3년(전문대학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시험면제: 10년 이상 조세분야 경력이 있는 교수, 판사, 고위공무원(일반 공무원의 경우 15년)</li> <li>약식시험: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졸업 &amp; 회계학 또는 조세법 전공</li> <li>세무경력자, 회계사, 변호사, FT2·CPT 등 고급공무원 시험합격자, CIO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내 및 EU 내의 단체 회원들은 학력요건 면제</li> </ul> </li> <li>ATT: 경우에 따라 연구생 등록을 위해 영어 및 수학 시험이 필요할 수 있음</li> </ul>	2년(ATT) 또는 3년(C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회계사, 변호사, 고급공무원 시험 합격자 등은 시험과목 일부 면제</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또는 단과대학교과정 이수 &amp; 경영학, 경제학, 법학 또는 국가학 전공</li> <li>1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독립기장사의 경우에는 학력요건 면제</li> </ul>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고급공무원 시험합격자의 경우 시험과목 일부 면제</li> </ul>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졸업</li> <li>국왕이 정한 자격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학력요건 면제</li> </ul>	3년	있음
체코	대학 졸업	n/a	있음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시험 통과 후 연구생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협회가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해야 함</li> <li>일정한 학위, 전문가 자격증,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입학시험 면제</li> </ul>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AITI 시험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이와 유사한 자격증 소유자에게 시험과목 일부 면제</li> </ul>
라트비아	경제학이나 세법 분야의 고등교육 학위 취득	3년	n/a
슬로바키아	확인 못함	장기의 경력(구체적인 연수 확인 못함)	있음
네덜란드	대학 또는 기술전문대학 졸업 & 조세법 전공	확인 못함	확인 못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또는 전문고등학교 졸업 &amp; 법률학 또는 경제학 전공</li> <li>3년 이상 세무행정 경력 공무원, 회계사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등은 학력요건 면제</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있음</li> <li>시험면제: 회계사, 변호사</li> </ul>
중국	대학 졸업	3년	있음
호주	대학 또는 기술전문대학 졸업 & 회계학, 호주 소득세법, 상법 등의 과목 이수	직전 5년 동안 1년(대학 졸업) 또는 2년(기술전문대학 졸업)	n/a

위 표를 중심으로 각각의 자격요건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시험 응시 자격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법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FE의 권고 규정에 따르면 회원 단체의 개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적합한 이론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EU의 많은 국가들이 이 지침에 따라 시험 응시요건으로 학력이나 전공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실무경력 요건

국가별로 요구하는 경력 기간이 0~3년으로 상이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체코공화국, 아일랜드 등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세무대리인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월의 실무 경력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바, 경력기간 요건이 있는 국가 중 요구하는 기간이 가장 짧다. 그 다음이 1년의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호주이며, 독일과 일본이 2년으로 그 다음이다.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은 보통 3년의 경력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CFE 규정에 따르면 회원 단체의 개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바, EU 국가들은 대부분 이 지침에 따라 3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CFE의 규정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경력 요건을 없애거나 이보다 단기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독일, 호주 등은 대학 졸업자보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장기의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 라. 시험통과 요건

### 1) 시험통과 요건의 존재 여부

라트비아와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학력 및 경력 요건만을 충족하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외의 국가들은 시험에 통과해야 세무자격증이 발급된다.

CFE 규정에 따르면 회원 단체의 개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국가, 국가에서 승인받은 교육시설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② 이 시험에는 세법(특히, 소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경제학, 회계원리, 기업법, 세무행정, 전문직업인의 책임과 윤리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이 지침에 따라 시험통과 요건을 두고 있지만, 권고규정이다 보니 라트비아 같은 국가 등은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 2)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은 회계사, 변호사, 세무행정경력공무원에게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회계사, 변호사, 세무행정경력공무원 등도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들을 위해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4. 세무사 등록현황

### 가. 각국의 세무사협회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등록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

나라 등록자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각국의 세무사 제도를 이해하고, 외국세무자문사 신청자가 해당 국가의 진실한 등록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각국의 세무사협회와 홈페이지 주소, 등록자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6〉 각국의 세무대리인 협회

국가	세무대리인 협회	홈페이지	등록자 정보 공개여부
한국	한국세무사협회	www.kacpta.or.kr	공개
미국	등록대리인협회	www.naea.org	공개
독일	독일연방세무사협회	www.bstbk.de	공개
영국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또는 The Association of Taxation Technicians	www.tax.org.uk 또는 www.att.org.uk	공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경제수탁협회	www.kwt.or.at	공개
벨기에	Institut des Experts-Comptables et des Conseils Fiscaux	www.iec-iab.be	공개
체코	Komora Daňových Poradců ČR	www.kdpcr.cz	공개
아일랜드	The Irish Taxation Institute	www.taxireland.ie	공개
라트비아	Latvijas Nodokļu Konsultantu Asociācija	www.lnka.lv	공개
슬로바키아	Slovenská komora danových poradcov	www.skdp.sk	공개
네덜란드	De Nederlandse Federatie van Belastingadviseurs	www.fb.nl	없음
일본	日本税理士會聯合會	www.nichizeiren.or.jp	없음
중국	中国注册税务师协会	www.taxexpert.com.cn/manage/index.asp	단체회원만을 공개
호주	Tax Agents' Board	www.tabd.gov.au	공개

## 나. 등록현황

각 국의 세무사 등록자 수를 정리하면 <표 IV-6>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세무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래 표에서는 세무사 등록자 수만을 단순 집계했다. 따라서 회계사 및 변호사의 수를 합산하면 각국에서 조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의 수는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7> 각국의 세무대리인 등록자 수

(단위: 명)

국가	기준일	등록자 수	비 고
한국	2007년 9월	7,260	• 세무사 등록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휴업중인 자 제외 • 2007년 9월 말 현재 회계사 7,419명, 변호사 8,287명
미국	2007년	40,000	• 2007년 8월 현재 회계사 349,170명 • 2007년 현재 변호사 1,143,358명
독일	2006년 1월	68,781	2006년 1월 현재 회계사 12,578명, 변호사 138,104명
영국	2007년	23,000	CIOT 14,000명, ATT 9,000명
오스트리아	2000년 1월	3,925	2000년 1월 현재 회계사 1,167명
벨기에	2007년 12월 13일	6,274	
체코	2007년 12월 13일	4,173	
아일랜드	2007년	6,095	연구생(student) 포함
라트비아	2006년 12월	79	
일본	2007년 10월	70,680	세리사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숫자 포함
중국	2004년 말	62,000	2004년 말 현재 변호사 11만명, 회계사 14만명(개업 중인 자는 6만명)
호주	2007년 10월	28,389	

## 5. 세무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관련 규정(<표 IV-3> 참조)에서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세무사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

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증이 존재하긴 하나, 자격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국, 중국 등은 관련 규정에서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세 업무, 그 중에서도 특히 국세청에 대한 대리행위에만 등록대리인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8〉 세무사의 업무범위 국제비교

업무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호주	
세무서류작성	○	○	○	○	○	○	○	○	
세무 상담	○	○	○	○	○	○	○	○	
기장대행	○	○	○	○	○	○	○	○	
조세대리	신고·신청	○	○	○	○	○	○	○	
	행정심판	○	○	○	○	○	○	○	
	조세소송	X	○	○	X <sup>1)</sup>	○	△ <sup>2)</sup>	○	X
	조세형사소송	X	X	○	X	○	X	X	X

주: 1) 사무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법정변호사에게 지시를 전달할 수 있음.

2)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보좌인으로서 조세 관련 사항을 진술할 수 있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국가들은 모두 세무서류 작성이나 세무 상담, 기장대행, 세무 신고·신청 대리, 행정심판 대리 업무 등을 세무사의 업무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소송이나 조세형사소송 대리 업무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즉,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소송대리 권한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호주, 영국 등은 변호사의 전문영역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법률이나 사법기관 내의 절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실적 또한 거의 전무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세형사소송 이외의 조세소송에서 세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보좌인 자격으로 출두하여 조세 관련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

## 6.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및 설립요건

### 가. 법적 형태

일부 국가들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별로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9〉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국가	법적 형태
한국	유한회사
독일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일본	합명회사
호주	파트너십 또는 회사(회사의 형태에는 제한 없음)
오스트리아	주식회사, 합자영리회사, 유한회사, 개방적 영리회사
중국	파트너십 또는 유한회사
영국	파트너십 또는 회사(회사의 형태에는 제한 없음)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은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에 제한이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사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 이전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 나. 설립요건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에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성원 중 일정 수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거나 세무사가 의결권의 대다수를 보유해야 한다든지 등의 인적요건을 두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세무법인의 실질적인 지

배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설립자 본금에 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 IV-10〉 세무법인의 설립 형태

국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원이 세무사</li> <li>• 3명 이상의 사원</li> <li>• 3인 이상의 이사</li> <li>• 이사와 직원 중 5인 이상이 세무사</li> <li>• 3인 이내의 대표이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2억원 이상</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세무사이어야 함</li> <li>• 의결권의 다수가 세무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및 세무대리사에게 귀속하고 있을 것</li> <li>• 이사회구성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수에 있어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및 세무대리사의 수가 세무사보다 많아서는 안 됨</li> </ul>	n/a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십: 각 파트너가 CTA 또는 파트너 중 75% 이상이 CTA 또는 공인자격증 보유자</li> <li>• 회사: 각 이사가 CTA 또는 이사 중 75% 이상이 CTA 또는 공인자격증 보유자</li> </ul>	n/a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수탁사 직업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와 자녀, 경제수탁 직업 행사 권한을 가진 회사만이 사원이 될 수 있음</li> <li>• 인적회사의 경우 경제수탁사가 자본과 투표권에 있어 다수를 차지해야 함</li> <li>• 자본회사의 경우 경제수탁사가 기본자본금 또는 설립금과 투표권에 있어 다수를 차지해야 함</li> </ul>	n/a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원이 세리사이어야 함</li> </ul>	n/a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명 이상의 세무사</li> <li>-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함</li> </ul> </li> <li>• 유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명 이상의 세무사</li> <li>-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십: 등록자본금 10만 원 이상</li> <li>• 유한회사: 등록자본금 30만 원 이상</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가 의결권의 25% 이상을 수익적으로 소유해야 함</li> <li>• 각 이사가 세무대리인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n/a

## V. 결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 역사를 살펴보면 세무서비스와 회계서비스의 시장개방 내용 및 수준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세무서비스의 경우 회계서비스와는 다른 독자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다 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통일되는 추세에 있는 회계서비스와 달리 세무서비스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없고, 국가마다 독자적인 세법 규정과 세무행정 관행이 존재한다<sup>116)</sup>. 또한 공인회계사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며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세무사제도의 경우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며,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업무범위 또한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FTA를 포함하여 향후 시장개방 논의 시에는 이러한 세무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서비스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자격증을 소유해야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 반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하며, 민간협회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는 등 국가별로 그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세무전문가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들을 세무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포함하는 경우 경력기간 요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sup>117)</sup>. 이 외에도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요건 또는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 등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 심사 시에는 이러한 질적 수준의

11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117) 회계사, 변호사 등은 회계 또는 법률 업무와 세무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무업무에만 투입됐던 시간을 집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갖고 있는 세무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 신청자가 원자격국의 진실한 등록자에 해당하는지와 협회 등으로부터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국가의 세무전문가 단체와 정보교환 약정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 또는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경호 · 윤재원, 『회계서비스시장개방 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 김완석 · 이종영, 『오스트리아 세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 \_\_\_\_\_,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보고서』 제6집, 한국조세연구소, 1994.
- 김유찬 외, 「독일, 일본, 미국의 세무사관련법령집」, 『조세보고서』 제14집, 한국조세연구소, 2003.
- 세무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최명근, 「세무사제도의 과제와 시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세보고서』 제18집, 한국조세연구소, 1996.
- 한국세무사회, 「독일연방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 계간 『세무사』 2006년 겨울호 통권 111호, 2006.
- \_\_\_\_\_,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 계간 『세무사』 2006년 겨울호 통권 111호, 2006.
- \_\_\_\_\_, 『한·미 FTA 정책 대토론회(세무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자료집』, 2007.
- ATT, “ATT student prospectus and detailed syllabus,” 2007.
- CIOT, “How to become a Chartered Tax Adviser 2007,” 2007.
- \_\_\_\_\_,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s Membership Regulations” Circular 230  
TN/S/O/KOR/Rev.1, 14 June 2005(05-2484)

[www.aotca.org](http://www.aotca.org)

[www.fta.go.kr](http://www.fta.go.kr)

[www.hmrc.gov.uk/agents/](http://www.hmrc.gov.uk/agents/)

[www.irs.gov/taxpros/agents](http://www.irs.gov/taxpros/agents)

[www.kacpta.or.kr](http://www.kacpta.or.kr)

[www.kicpa.or.kr](http://www.kicpa.or.kr)

[www.koreanbar.or.kr](http://www.koreanbar.or.kr)

[www.naea.org/MemberPortal/](http://www.naea.org/MemberPortal/)

[www.tax.org.uk](http://www.tax.org.uk)

세법연구 07-11

##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박명호 · 기은선 · 김정아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87-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